

2020 충청남도체육대회

참 가 요 강



충청남도체육회

Chungcheongnamdo Sports Council

목 차

| | |
|--------------------|----|
| □ 일반사항 | 1 |
| □ 시 상 | 2 |
| □ 참가요령 | 3 |
| 1. 경기방법 | 3 |
| 2. 심판 및 경기규칙 | 3 |
| 3. 채점방법 | 3 |
| 4. 참가자격 | 3 |
| 5. 참가신청 | 5 |
| 6. 사전열람 | 6 |
| 7. 시군대표자 회의 | 6 |
| | |
| □ 채점 경기종목별 참가요령 | |
| 1. 검 도 | 8 |
| 2. 게이트볼 | 9 |
| 3. 궁 도 | 10 |
| 4. 배 구 | 11 |
| 5. 배드민턴 | 13 |
| 6. 보디빌딩 | 14 |
| 7. 복 싱 | 16 |
| 8. 볼 링 | 18 |
| 9. 수 영 | 19 |
| 10. 씨 림 | 20 |
| 11. 야 구 | 21 |
| 12. 역 도 | 22 |

| | |
|-----------|----|
| 13. 유 도 | 23 |
| 14. 육 상 | 24 |
| 15. 족 구 | 25 |
| 16. 축 구 | 26 |
| 17. 탁 구 | 27 |
| 18. 태 권 도 | 28 |
| 19. 테 니 스 | 29 |

□ 비채점 경기종목별 참가요령

| | |
|----------------|----|
| 1. 그라운드골프 | 31 |
| 2. 농 구 | 32 |
| 3. 댄스스포츠 | 34 |
| 4. 산악(등산) | 37 |
| 5. 승 마 | 39 |
| 6. 자 전 거 | 42 |
| 7. 체조(에어로빅스체조) | 44 |
| 8. 파크골프 | 47 |
| 9. 패러글라이딩 | 49 |
| 10. 합 기 도 | 53 |

□ 충청남도종합체육대회 관련규정

| | |
|--------------------|----|
| 1. 충청남도종합체육대회 규정 | 56 |
| 2. 종합체육대회 경기운영 내규 | 66 |
| 3. 충청남도체육대회 채점 내규 | 74 |
| 4. 충청남도체육대회 특별상 내규 | 79 |

2020 충청남도체육대회 참가요강

일반사항

1. 대회명칭: 2020 충청남도체육대회
2. 대회기간: 2020년 ○월 ○일(○) ~ ○월 ○일(○) <○일간>
3. 개최지: 당진시
4. 주최: 충청남도체육회
5. 주관: 당진시, 당진시체육회
6. 후원: 충청남도, 충청남도교육청
7. 경기종목: 29종목

| 경기종목 | |
|---------------------|--|
| 채점 종목 (19종목) | 검도, 게이트볼, 궁도,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복싱, 볼링, 수영, 씨름, 야구, 역도, 유도, 육상, 족구, 축구, 탁구, 태권도, 테니스 |
| 비채점 종목 (10종목) | 그라운드골프, 농구, 댄스스포츠, 산악(등산), 승마, 체조(에어로빅스체조), 파크골프, 패러글라이딩, 합기도 |

8. 중별: 초등학교부, 중학교부, 고등학교부, 일반부

시 상

○ 종합시상

1위: 우승기, 도지사배

2위: 준우승기, 도지사배

3위: 3위기, 도지사배

○ 경기종목별 종합시상

1위, 2위, 3위: 도지사배

○ 경기종목별 세부종목 개인, 단체시상

1위: 금메달, 상장

2위: 은메달, 상장

3위: 동메달, 상장

○ 특별상시상

성취상: 1위, 2위, 3위(도지사배)

모범선수단상(1개 시군): 도지사배

참가요령

1. 경기방법

가. 시군 대항전으로 실시한다.

나. 기록경기를 제외한 모든 경기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토너먼트방식으로 하되 동위자 순위전(3,4위전 또는 5,6,7,8위전)은 실시하지 않는다.(동순위 처리)

2) 토너먼트로 진행되는 단체경기종목, 개인단체종목 및 개인종목은 시드제를 적용하며 1번 시드는 개최지 시군에 배정한다.

다. 승부는 경기종목별 대회요강에 의하되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경기종목별 경기규칙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기타 경기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대회본부(도체육회)에서 결정한다.

2. 심판 및 경기규칙

가. 심판은 해당 종목별 회원종목단체의 공인심판이 담당한다.

나. 경기규칙은 해당종목별 회원종목단체의 경기규칙에 의한다.

다. 경기운영은 충청남도체육대회 경기운영내규에 의한다.

3. 채점방법

가. 채점은 충청남도체육대회 채점내규에 의거 채점한다.

나. 본 대회에서 다음 종목은 비채점 종목으로 종합순위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 비채점 종목: 그라운드골프, 농구, 댄스스포츠, 산악(등산), 승마, 자전거, 체조(에어로빅스체조), 파크골프, 패러글라이딩, 합기도

4. 참가자격

가. 충청남도 도민으로서 종목별 도 회원종목단체에 등록을 필한 임원, 선수에 한함.

나. 시군별 예선대회에서 선발된 자가 참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1) 경기부문별로 특별한 사유가 있어 예선을 거치지 아니한 자를 참가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시군체육회장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2) 이종으로 예선대회에 참여한 자는 대회 참가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예선대회에서 탈락되어 해당 시군으로 참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선수가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시군체육회장의 추천을 받아 참가할 수 있다.

다. 일반부는 26세 이상인자만 참가할 수 있다(일부종목 별도 연령 지정).

채점 종목의 일반부 선수는 2015. 12. 31.이전부터 대회개시 당일 현재까지

충청남도 관내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에 한하며, 비채점 종목의 일반부 선수는 대회개시일 기준으로 3개월(90일) 이상 충청남도 관내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에 한한다.

- 1) 공무원은 도내에 2015.12.31.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로서 본인의 원에 의하여 소재지 시군으로도 출전할 수 있다.
- 2) 전년도 참가선수가 해당중앙종목단체에 등록하였거나 당해 연도 해당 중앙종목단체에 등록된 선수는 참가할 수 없다.
(궁도, 보디빌딩 종목은 선발로 전국체전에 참가한 선수는 참가가 가능하다. 단, 국제대회 참가자는 참가할 수 없다.)
다만, 선발로 구성되어 본도 대표로 전국체전에 참가하는 선수는 참가할 수 있다. (해당종목 전국체전 대표선수는 제외되나 학생선수는 예외)
- 3) 실업팀 소속이라 하더라도 전국체전에 참가한 선수가 도내 선수들로 선발전을 통하여 구성된 실업팀에 대하여는 출생지 시군으로 참가할 수 있다. (궁도에 한함)
- 4) 현역군인(사회복무요원 포함)은 출전할 수 없다.
다만, 하사관 이상 직업군인은 참가할 수 있으며, 2019.12.31.이전부터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에 한한다.

라. 학생부 선수는 도내 학교 소재지 시군으로 참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 1) 고등부 선수는 도내 고등학교 재학생으로서 본인의 원에 의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출신지로도 참가할 수 있다.
- 2) 중학교 선수는 도내 중학교 재학생으로서 본인의 원에 의하여 초등학교 출신지로도 참가할 수 있다.

마. 체육특기자로서 최초 선수등록 한 시군에서 타 시군으로 전학한 자는 대회개시일 기준으로 만 1년이 경과된 후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바. 학생부 선수는 당해연도 1학기 개학전일까지 전·입학을 하였을 경우에는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체육특기자는 “마” 항목 적용)

사. 체육특기자로서 최초 선수등록 한 타 시·도에서 도 관내 시군으로 전학 및 진학한 자는 대회개시일 기준으로 만 1년이 경과된 후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타 시군에 전학한 자는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 1) 교육부 장관의 승인에 의하여 학교가 폐교, 합병 및 분리 신설 시 관내 해당 종목 육성학교가 없는 경우
- 2)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진학 시 당해 시도 관내 해당 종목 육성학교가 없거나 당해 시·도 특기자 진학을 신청하였음에도 특기자 정원이 없어 관내 시군으로 진학한 경우
- 3) 해당 종목 팀 해체 시 당해 해당 지역에 동일 종목의 팀이 없을 경우

-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 대상자가 생계유지를 위한 거주지 이동으로 전 가족의 전·출입이 확인되어 전 소속 학교장의 이적동의서를 받은 자
- 5) 단체경기종목(예: 축구, 야구, 배구) 중 해당 시군에서 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신설 팀을 창단 할 경우 타 시군 선수의 전·입학 선수가 전 소속 학교장의 이적동의서를 받은 자
- 6) 체육특기자 가족 중 근무지의 인사이동으로 부득이하게 전 가족이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해당자 근무처 재직증명서, 인사 이동 증빙서가 확인되어 전 소속 학교장의 이적동의서를 받은 자
- 7) 체육특기자의 가족 중 개인 사업자가 생계유지를 위해 부득이하게 전가족이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변경 전·후 사업자 등록증이 확인되어 전 소속 학교장의 이적동의서를 받은 자

자. 동일인이 1개 경기부문 이외의 타 경기부문에 참가할 수 없다.

차. 연령별 참가종목에 대하여는 참가신청서 양식대로 참가신청을 하고 해당 연령선수가 없을 경우 아래연령으로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아래 연령자는 위 연령자로 참가신청을 할 수 없다.

카. 본 대회 해당종목에 출전하는 모든 선수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심판으로부터 신원을 확인 받은 후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 1) 일반부 선수의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한한다. 다만, 신분증 분실자는 국가에서 인정한 임시 주민등록증도 인정한다.
- 2) 학생부는 사진이 부착된 재학증명서를 대회전 종목별 해당 경기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참가신청 제출 시)
- 3) 신분증의 확인은 해당 경기 개시 전까지 완료하며, 경기 개시 전에 신분증이 확인되지 않은 선수와 해당 선수가 소속된 팀은 실격처리 된다.

타. 2개 시군 이상 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본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참가신청하여야 한다. 단, 이중으로 동의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 선수의 참가자격을 박탈하며,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동의서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 해당 시군은 차기 대회 당해 세부종목에 참가할 수 없다.

5. 참가신청

가. 신청마감(전산화): 2020년 0월 00일(0) 10:00 ~ 0월 00일(0) 00:00까지

※ 전산 입력 마감이후 수정 불가

나. 신청장소: 충청남도체육회 경기운영팀

다. 참가신청: 각 종목별 참가요령에 의함.

라. 신청방법: 시군 책임자가 직접 제출해야 함.

마. 구비서류

- 1) 참가신청서 2부(본회 전산화양식) 제출
 - 1부는 충청남도체육회, 1부는 해당 회원종목단체
 - 2) 종목별 선수등록부 2부(사진 부착분, 본회 전산화양식) 제출
 - 1부는 충청남도체육회, 1부는 회원종목단체
 - ※ 학생부는 생활기록부나 재학증명서 제출 ⇒ 도체육회에 제출
(재학증명서는 도체육회 양식 및 각 학교 양식 제출이 가능하나 선수의 생년월일 및 재적 년, 월, 일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며 명시되지 않을 경우 생활기록부 제출)
 - 3) 참가신청 서류 제출 시 일반부 선수는 주민등록초본 1부 제출(주소변동사항 포함)
 - 4)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는 작성 후 시군체육회에서 관리
 - 5) 참가신청서 구비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 다만, 이의신청 해당선수에 대하여 다음의 서류 중 필요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 학생부 선수는 재학증명서 1부, 중학교 출신지로 참가하는 자는 졸업증명서 1부 추가
 - 일반부 선수는 직장 소재지(공무원)로 참가하는 자는 재직증명서 1부 추가
- 바. 일단 제출된 참가신청서는 일체 변경할 수 없음.
- 1) 부상 선수의 경우에는 2020년 0월 00일(), 15:00까지 유자격 선수로 교체가 가능하며, 부상 선수를 교체할 경우에는 시군체육회에서 진단서를 첨부하여 직접 제출한다.

6. 사전열람

- 가. 열람기간: 2020년 0월 00일(0) ~ 0월 0일(0) 00:00까지<00일간>
 - 나. 장 소: 충청남도체육회 경기운영팀(충남체육회 홈페이지 내)
 - 다. 조 치
 - 1) 시군별 책임자가 해당종목의 참가신청서를 열람하여 이상이 있을 시에는 즉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본회는 이를 조사·처리하되 열람확인서 제출 기한 이후에 제출한 이의신청(참가자격에 대한)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2) 이의신청 후 이의제기 된 내용에 대한 정정요구 및 취소는 불가함.
- 라. 열람확인서 제출: 2020년 0월 0일(0) 00:00, 충청남도체육회 경기운영팀

7. 시군 대표자회의

- 가. 일 시: 2020년 0월 00일(0) 00:00 예정
- 나. 장 소: 당진시 000
- 다. 토의사항
 - 1) 대회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2) 대진추첨 등

채점 경기종목별 참가요령

1. 검토

1. 종 별

- 가. 혼성: 초등학교부
- 나. 남자: 중학교부, 일반부(고등부 포함)
- 다. 여자: 일반부(중·고등부 포함)<시범>

2. 참가자격

- 가. 학생부는 참가신청지 소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
- 나. 일반부는 1995.12.31.이전 출생자로서 대회 참가요령 4항에 의함.
- 다. 대한검도회 및 충남검도회에 선수등록을 필한 자 또는 대한검도회 및 충남검도회에서 발급한 회원증을 취득한 자에 한함.
- 라. 선수출신(1부 학교팀, 실업팀)은 은퇴 후 만7년이 경과한 자에 한함.

3. 참가인원

- 가. 감독, 코치, 주무 외 26명 이내
- 나. 초등학교부 5명(남·여), 중학교부 5명(남), 남자일반부 5명(고 2, 일 3), 여자일반부 5명(중·고 2, 일 3)
- 다. 후보 선수는 각 부별 1명씩만 참가 가능

4. 경기방법

- 가. 토너먼트식 단체전 승자수법
- 나. 경기시간: 초등학교부(4분), 남자중학교부(4분), 남자일반부(5분), 여자일반부(중·고 4분, 일 5분)
- 다. 무승부일 경우 제한시간 없이 단판승부로 대표전을 한다.

5. 채점방법: 단체 5위까지 다음과 같이 배점한다.

| | | | | |
|-----|----|----|------|------|
| 등 위 | 1위 | 2위 | 3위 | 5위 |
| 배 점 | 8점 | 7점 | 5.5점 | 2.5점 |
| 팀 수 | 1 | 1 | 2 | 4 |

2. 게이트볼

1. 종 별

가. 남자: 일반부

나. 여자: 일반부

2. 참가자격: 1960.12.31.이전 출생자로서 대회 참가요령 4항에 의함.

3. 참가인원: 감독, 코치, 주무 외 7명 이내

(61~65세 2명, 66~70세 2명, 71세 이상 3명)

4. 경기방법

가. 토너먼트식 단체전

나. 연령별 출전현황

| 구 분 | 61 ~ 65세 | 66 ~ 70세 | 71세 이상 |
|-----|----------|----------|--------|
| 인 원 | 2명 | 2명 | 3명 |

5. 채점방법: 단체 5위까지 다음과 같이 배점한다.

| 등 위 | 1위 | 2위 | 3위 | 5위 |
|-----|----|----|------|------|
| 배 점 | 8점 | 7점 | 5.5점 | 2.5점 |
| 팀 수 | 1 | 1 | 2 | 4 |

3. 궁도

1. 종 별: 일반부

2. 참가자격: 1995.12.31.이전 출생자로서 대회 참가요령 4항에 의함.

3. 참가인원: 감독, 코치, 주무 외 선수 7명 이내

4. 경기방법

가. 단체전 기록경기로 하되 7명이 참가하여 상위자 5명의 성적합계로 순위를 정한다.

나. 시군별 1명씩을 1개조로 편성하여 실시하되, 1명이 5순(1순=5발)을 발사한다.

5. 채점방법: 단체기록이 최하위 시군을 1점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1점씩 가산하여 채점한다.

4. 배구

1. 종 별

- 가. 남자: 초등학교부, 일반부
- 나. 여자: 초등학교부, 일반부

2. 참가자격

- 가. 초등학교부는 참가신청지 소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
- 나. 일반부는 1995.12.31.이전 출생자로서 참가요령 4항에 의함.
- 다. 대한배구협회 및 한국프로연맹에 선수로 등록된(등록이력) 자는 출전할 수 없다. 단, 충남대표 선수로 전국체전에 출전한 자는 참가 가능
- 라. 남자 일반부에 참가하는 선수출신은 5명까지 등록 가능하며, 4명까지 아래와 같이 연령별로 경기에 참가할 수 있다. 단, 선수출신이라도 51세 이상이면 선수출신 제한에 관계없이 등록하여 경기에 참가할 수 있다.

| | | | | |
|-----|--------|--------|--------|--------|
| 구 분 | 26~30세 | 31~35세 | 36~40세 | 41세 이상 |
| 인 원 | 1명 | 1명 | 1명 | 1명 |

- 마. 여자 일반부에 참가하는 선수출신은 5명까지 등록 가능하며, 4명까지 26세 이상으로 경기에 참가할 수 있다. 단, 선수출신이라도 46세 이상이면 선수출신 제한에 관계없이 등록하여 경기에 참가할 수 있다.

3. 참가인원

- 가. 초등학교부: 감독, 코치 외 선수 9명 이내
- 나. 일반부: 감독, 코치 외 선수 13명 이내
(26세 이상 3명, 31세 이상 4명, 36세 이상 3명, 41세 이상 3명)

4. 경기방법

가. 토너먼트 경기로 진행한다.

나. 초등학교부는 6인제 3세트로 진행한다.

다. 일반부는 9인제 3세트로 진행하며, 연령별 참가 인원은 다음과 같으며, 위 연령자는 아래 연령으로 경기 참가가 가능하다. 단, 아래 연령자는 위 연령대로 참가할 수 없다.

| | | | | |
|-----|--------|--------|--------|--------|
| 구 분 | 26~30세 | 31~35세 | 36~40세 | 41세 이상 |
| 인 원 | 2명 | 3명 | 2명 | 2명 |

5. 채점방법: 단체 5위까지 다음과 같이 배점한다.

| | | | | |
|-----|----|----|------|------|
| 등 위 | 1위 | 2위 | 3위 | 5위 |
| 배 점 | 8점 | 7점 | 5.5점 | 2.5점 |
| 팀 수 | 1 | 1 | 2 | 4 |

5. 배드민턴

1. 종 별

가. 남자: 일반부

나. 여자: 일반부

2. 참가자격: 1995.12.31.이전 출생자로서 참가요령 4항에 의함.

3. 참가인원

가. 감독, 코치, 주무 외 각 부별 12명 이내

나. 1복식, 4복식(최고 연령 후보 1명(36세 이상) 포함)

다. 2복식, 3복식, 5복식(최고 연령 후보 1명(46세 이상) 포함)

4. 경기방법

가. 토너먼트식 단체전으로 5복식 연령대별로 진행한다.

나. 게임별 3판 2선승제로 진행되며, 5게임 중 3게임을 먼저 이긴 팀이 승리하며, 세트당 21점에 먼저 도달하면 그 세트를 승리하고 20점에서 동점이 발생할 경우 2점 차이가 나면 승패가 결정되며, 모든 경기는 랠리포인트제로 실시한다.

다. 1, 4게임은 선수출신이 참가하지 못하고, 2, 3, 5게임은 선수출신이 참가 가능하다.

| 구 분 | 1게임(2명) | 2게임(2명) | 3게임(2명) | 4게임(3명) | 5게임(3명) |
|--------|---------|---------|---------|---------|---------|
| 남자 12명 | 26~35세 | 26~35세 | 36~45세 | 36세 이상 | 46세 이상 |
| 여자 12명 | 26~35세 | 26~35세 | 36~45세 | 36세 이상 | 46세 이상 |

5. 채점방법: 단체 5위까지 다음과 같이 배점한다.

| 등 위 | 1위 | 2위 | 3위 | 5위 |
|-----|----|----|------|------|
| 배 점 | 8점 | 7점 | 5.5점 | 2.5점 |
| 팀 수 | 1 | 1 | 2 | 4 |

6. 보디빌딩

1. 종 별

가. 남자: 고등학교부, 일반부

나. 여자: 일반부(시범종목)

2. 체 급

가. 체급수: 15체급(정식 12, 시범 3)

나. 시범종목: 키, 몸무게 제한 없음(OPEN)

| 체 급 | 고 등 학 교 부 | 일 반 부 | |
|---------|-----------------|-----------------|------------|
| | 남자 | 남자 | 여자 |
| 플 라 이 급 | × | 60kg까지 | × |
| 밴 텀 급 | 65kg까지 | 60kg초과 ~ 65kg까지 | × |
| 라 이 트 급 | 65kg초과 ~ 70kg까지 | 65kg초과 ~ 70kg까지 | × |
| 웰 터 급 | 70kg초과 ~ 75kg까지 | 70kg초과 ~ 75kg까지 | × |
| 라이트미들급 | × | 75kg초과 ~ 80kg까지 | × |
| 미 들 급 | × | 80kg초과 ~ 85kg까지 | × |
| 라이트헤비급 | × | 85kg초과 ~ 90kg까지 | × |
| 헤 비 급 | 75kg초과 | 90kg초과 | × |
| 피 지 크 | × | OPEN(시범종목) | × |
| 비키니피트니스 | × | × | OPEN(시범종목) |
| 바디피트니스 | × | × | OPEN(시범종목) |
| 계 | 4 | 8(1) | (2) |

3. 참가자격

가. 고등학교부는 참가신청지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

나. 일반부는 2001.12.31.이전 출생자로서 대회 참가요령 4항에 의함.

4. 참가인원: 고등학교부는 감독, 코치, 주무 외 4명 이내, 일반부는 감독, 코치, 주무 외 11명 이내

5. 경기방법

가. 득점에 의한 순위 결정

나. 정식종목의 참가는 각 시군은 고등부는 총 4명, 일반부는 총 8명 이내에서 한 체급에 최대 2명까지 참가하며, 계체 시 월체를 할 수 있다. 단, 시군별 한 체급에 한해서만 월체를 인정하고, 하체는 불가하다. 2명이 참가한 체급으로는 월체가 불가하며 해당 선수는 자동 실격된다.

다. 시범종목(피지크, 비키니피트니스, 바디피트니스)은 각 종목당 1명씩만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6. 채점방법

가. 체급별 참가자중 1위를 8점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1점씩 감하여 8위까지만 채점한다. 한 체급에 2명이 참가하여 8위 이내의 성적을 거둔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모두 인정한다.

나. 기타 사항은 대한보디빌딩협회 경기 규칙을 따른다.

| | | | | | | | | |
|----|----|----|----|----|----|----|----|----|
| 등위 | 1위 | 2위 | 3위 | 4위 | 5위 | 6위 | 7위 | 8위 |
| 배점 | 8점 | 7점 | 6점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7. 복싱

1. 종 별: 중학교부(남)

2. 체 급: 14체급

| 체 급 | 체 중 |
|---------------|-----------|
| 스 몰 급 | 38 kg 까 지 |
| 모 스 키 토 급 | 42 kg " |
| 핀 급 | 46 kg " |
| 라 이 트 플 라 이 급 | 48 kg " |
| 플 라 이 급 | 50 kg " |
| 라 이 트 밴 텀 급 | 52 kg " |
| 밴 텀 급 | 54 kg " |
| 페 더 급 | 57 kg " |
| 라 이 트 급 | 60 kg " |
| 라 이 트 웰 터 급 | 63 kg " |
| 웰 터 급 | 66 kg " |
| 라 이 트 미 들 급 | 70 kg " |
| 미 들 급 | 75 kg " |
| 라 이 트 헤 비 급 | 80 kg " |
| 계 | 14 |

3. 참가자격

- 가. 참가신청지 소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
- 나. 당해 연도 충남복싱협회에 등록을 필한 자

4. 경기방법

- 가. 토너먼트경기로 한다.
- 나. 경기시간은 1회전 2분 경기로 하되 3회전 경기로 한다.
- 다. 복싱글러브는 10온스를 사용하며 헤드기어와 호구(캡), 마우스피스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 라. 경기도중 심판이 일방적인 공격에 상대선수와 경기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도 승패가 결정되었다고 판단되면 경기를 중단하고 승패를 결정할 수 있으며, 게임위주가 아닌 기술위주로 판정한다.

5. 기타사항

- 가. 체중은 평상시 체중으로 참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체중을 감량한 선수가 발견되면 대회참가 취소 및 지도자 징계
- 나. 출전 1주일 이내에 발행한 의사의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다. 계체량은 각 체급별 경기당일 08:00~09:00사이에 정하여 실시한다.

6. 채점방법: 체급별 5위까지 다음과 같이 배점한다.

| | | | | |
|-----|----|----|------|------|
| 등 위 | 1위 | 2위 | 3위 | 5위 |
| 배 점 | 8점 | 7점 | 5.5점 | 2.5점 |
| 인 원 | 1 | 1 | 2 | 4 |

8. 볼링

1. 종 별

가. 남자: 일반부

나. 여자: 일반부

2. 참가자격: 1995.12.31.이전 출생자로서 대회 참가요령 4항에 의함.

3. 참가인원: 각부별 감독 1명, 코치 1명 외 6명 이내

4. 경기방법

가. 단체전(남, 여) 5인조 전으로 실시함.

나. 개인별 6게임 경기 후 5명의 총 획득 점수를 합산하여 순위를 결정함.

다. 기타사항은 대한볼링협회 경기 규칙을 따른다.

5. 채점방법: 단체전(남, 여) 기록이 최하위 시군을 1점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1점씩 가산하여 채점한다.

9. 수영

1. 종별 및 경기종목: 초등학교부(남, 여), 중학교부(남, 여)

| 종 | 목 | 초등학교부 | | 중 학교 부 | |
|-------|------|-------|----|--------|----|
| | | 남 | 여 | 남 | 여 |
| 자 유 형 | 50m | ○ | ○ | ○ | ○ |
| | 100m | ○ | ○ | ○ | ○ |
| 배 영 | 50m | ○ | ○ | ○ | ○ |
| | 100m | ○ | ○ | ○ | ○ |
| 평 영 | 50m | ○ | ○ | ○ | ○ |
| | 100m | ○ | ○ | ○ | ○ |
| 접 영 | 50m | ○ | ○ | ○ | ○ |
| | 100m | ○ | ○ | ○ | ○ |
| 개인혼영 | 200m | ○ | ○ | ○ | ○ |
| 계 영 | 200m | ○ | ○ | ○ | ○ |
| | 400m | ○ | ○ | ○ | ○ |
| 혼 계 영 | 200m | ○ | ○ | ○ | ○ |
| 계 | 12종목 | 12 | 12 | 12 | 12 |

2. 참가자격: 참가신청지 소재 초등학교, 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

3. 참가인원

가. 감독, 코치, 주무 외 선수 각 시군별 1인 2종목 이내, 1종목 2명까지 참가할 수 있으며, 후보 선수는 인정하지 않는다.

나. 계영 및 혼계영에 참가하는 선수는 참가신청서에 별도 표시 없이 경영에 참가하는 선수 전원을 대상으로 한다.

4. 채점방법: 수영 경영종목의 채점은 종목별 8위까지 입선자만 채점하되 1개 시군에 2인 이상이 입선할 때에는 상위자만 채점한다.

| 구분 \ 순위 | 1위 | 2위 | 3위 | 4위 | 5위 | 6위 | 7위 | 8위 |
|---------|-----|-----|-----|-----|----|----|----|----|
| 개 인 전 | 8점 | 7점 | 6점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 단 체 전 | 16점 | 14점 | 12점 | 10점 | 8점 | 6점 | 4점 | 2점 |

10. 씨름

1. 종 별: 초등학교부(남), 중학교부(남)

| 체 급 | 경 장 급 | 소 장 급 | 청 장 급 | 용 장 급 | 용 사 급 | 역 사 급 | 장 사 급 |
|-------|--------|--------|--------|--------|--------|--------|--------|
| 초등학교부 | 40kg이하 | 45kg이하 | 50kg이하 | 55kg이하 | 60kg이하 | 70kg이하 | 70kg초과 |
| 중학 교부 | 60kg이하 | 65kg이하 | 70kg이하 | 75kg이하 | 80kg이하 | 90kg이하 | 90kg초과 |

2. 참가자격: 참가신청지 소재 초등학교, 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

3. 참가인원: 감독, 주무, 코치 외 선수체급별 1명이며, 체급별 후보선수 없음.

4. 경기방법

가. 토너먼트식 체급별 개인전

나. 무승부일 경우 주의나 경고를 받지 않은 선수가 승자가 되고, 경고를 받은 선수가 없을 경우 체중이 가벼운 선수를 승자(계체량승)로 하며, 체중이 같을 때는 추첨한다.

5. 기타사항: 모든 선수는 자기 체급 이상에는 참가할 수 있으나, 자기 체급보다 아래 체급으로는 참가할 수 없다.

6. 채점방법: 개인 5위까지 다음과 같이 배점한다.

| | | | | |
|-----|----|----|------|------|
| 등 위 | 1위 | 2위 | 3위 | 5위 |
| 배 점 | 8점 | 7점 | 5.5점 | 2.5점 |
| 인 원 | 1 | 1 | 2 | 4 |

11. 야구

1. 종 별: 일반부(남)

2. 참가자격: 1995.12.31.이전 출생자로서 대회 참가요령 4항을 우선 적용하고,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 고등학교 이상 선수등록한 자는 26세 이상으로 3명까지 참가 가능하고 투수로는 경기에 참가 할 수 없다.(단, 선수출신이라도 46세 이상이면 모든 포지션에 참가할 수 있다.)

3. 참가인원: 감독, 코치, 주무 외 선수 18명 이내

4. 경기방법

가. 토너먼트 경기로 진행한다.(정규이닝 7회)

나. 예선경기부터 결승경기 중 정규이닝(7회)까지 무승부일 경우
- 8회부터 IBAF규정 중 승부치기 규정에 따라 승패를 결정한다.

다. 콜드게임 적용은 4회(10점 이상), 5회(7점 이상)으로 한다.

라. 46세 이상 선수출신이 투수로 출전하였을 경우 3이닝으로 투구를 제한한다. 단, 교체된 투수는 다시 투수가 될 수 없다.

마. 우천 시 추첨으로 한다.

바. 기타 규정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규정을 따른다.

5. 채점방법: 단체 5위까지 다음과 같이 배점한다.

| | | | | |
|-----|----|----|------|------|
| 등 위 | 1위 | 2위 | 3위 | 5위 |
| 배 점 | 8점 | 7점 | 5.5점 | 2.5점 |
| 팀 수 | 1 | 1 | 2 | 4 |

12. 역도

1. 종 별: 중학교부(남)

2. 체 급: 9체급

| 체 급 | 체 중 |
|---------|---------|
| 45kg | 45kg 까지 |
| 50kg | 50kg 까지 |
| 56kg | 56kg 까지 |
| 62kg | 62kg 까지 |
| 69kg | 69kg 까지 |
| 77kg | 77kg 까지 |
| 85kg | 85kg 까지 |
| 94kg | 94kg 까지 |
| 94kg 이상 | 94kg 초과 |
| 계 | 9 |

3. 참가자격: 참가신청지 소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

4. 참가인원: 감독, 코치 외 선수 총 9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 각 체급 당 2명까지 참가

5. 경기방법: 인상, 용상, 합계(인상과 용상의 합계)를 별도 경기로 한다.

6. 채점방법: 체급별 참가자중 1위를 8점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8위까지만 채점하고, 인상·용상경기의 채점은 1위 3점, 2위 2점, 3위 1점으로 채점하되 1개 시군에 2인 이상이 입선할 때에는 상위자만 채점한다.

| 등 위 | 1위 | 2위 | 3위 | 4위 | 5위 | 6위 | 7위 | 8위 |
|----------|----|----|----|----|----|----|----|----|
| 합 계 배 점 | 8점 | 7점 | 6점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 인상, 용상배점 | 3점 | 2점 | 1점 | - | - | - | - | - |

7. 기타사항

가. 체중은 평소 체중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나. 체중감량은 절대 금지하며 계체량은 1회만 할 수 있다.

다. 경기를 종료한 후 어떤 선수의 신체규격, 골격사항 등을 관찰하여 감량하였다고 의심될 경우 즉시 그 선수를 계체하며 1.5kg이상 차이가 나면 해당 선수의 경기기록은 몰수되고 해당 감독, 코치는 중징계 할 수 있다.

라. 기타 규정은 대한역도연맹 규정을 따른다.

13. 유도

1. 종 별

가. 남자: 중학교부

나. 여자: 중학교부

2. 체 급: 17체급

| 남자중학교부 | 여자중학교부 |
|---------|---------|
| 48kg 이하 | 42kg 이하 |
| 51kg 이하 | 45kg 이하 |
| 55kg 이하 | 48kg 이하 |
| 60kg 이하 | 52kg 이하 |
| 66kg 이하 | 57kg 이하 |
| 73kg 이하 | 63kg 이하 |
| 81kg 이하 | 70kg 이하 |
| 90kg 이하 | 70kg 이상 |
| 90kg 이상 | × |
| 9 | 8 |

3. 참가자격: 참가신청지 소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

4. 참가인원: 감독, 코치, 주무 외 선수는 체급별 1명

5. 경기방법

가. 체급별 토너먼트식 개인전

나. 모든 선수는 자기 신청체급에 한하여 경기를 할 수 있다.

다. 경기시간은 남자중학교부 4분, 여자중학교부 3분 단위로 한다.

라. 기타사항은 대한유도회 심판, 경기규칙에 의한다.

6. 채점방법: 체급별 5위까지 다음과 같이 배점한다.

| 등 위 | 1위 | 2위 | 3위 | 5위 |
|-----|----|----|------|------|
| 배 점 | 8점 | 7점 | 5.5점 | 2.5점 |
| 인 원 | 1 | 1 | 2 | 4 |

14. 육상

1. 종별 및 경기종목

| 종 목 | 초등학교부 | | 중학교부 | | 고등학교부 | | 일 반 부 | |
|-----------|-------|---|------|---|-------|---|-------|---|
|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 100m | ○ | ○ | ○ | ○ | ○ | ○ | ○ | ○ |
| 200m | ○ | ○ | ○ | ○ | ○ | ○ | ○ | ○ |
| 800m | ○ | ○ | × | × | ○ | ○ | × | ○ |
| 1500m | × | × | ○ | ○ | × | × | ○ | ○ |
| 3000m | × | × | ○ | × | × | ○ | × | × |
| 5000m | × | × | × | × | ○ | × | ○ | × |
| 멀 리 뛰 기 | ○ | ○ | ○ | ○ | × | × | × | × |
| 높 이 뛰 기 | ○ | ○ | ○ | ○ | × | × | × | × |
| 포 환 던 지 기 | ○ | ○ | ○ | ○ | × | × | × | × |
| 400mR | ○ | | ○ | | ○ | | ○ | |
| 계 10종목 | 13 | | 14 | | 9 | | 9 | |

2. 참가자격

가. 학생부는 참가신청지 소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
나. 일반부는 1995.12.31.이전 출생자로서 대회 참가요령 4항에 의함.

3. 참가인원

가. 감독, 코치, 주무외 선수 각 시군별 1인 2종목 이내, 1종목 2명 이내
나. 400mR는 각부별 남녀 각 2명씩 출전하되 세부종목 참가선수에 한하여 참가할 수 있다. 단, 릴레이는 1인 2종목에서 제외한다.

4. 경기방법: 회원종목단체 경기방법에 의함.

5. 채점방법: 육상경기 채점은 종목별 8위까지의 입선자만 채점하되 1개 시군에 2인 이상이 입선할 때에는 상위자만 채점한다.

| 구분 \ 순위 | 1위 | 2위 | 3위 | 4위 | 5위 | 6위 | 7위 | 8위 |
|---------|-----|-----|-----|-----|----|----|----|----|
| 개 인 전 | 8점 | 7점 | 6점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 단 체 전 | 16점 | 14점 | 12점 | 10점 | 8점 | 6점 | 4점 | 2점 |

15. 족구

1. 종 별: 학생부(남), 일반부(남)

2. 참가자격

가. 학생부는 참가신청지 소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

나. 일반부는 1995.12.31.이전 출생자로서 대회 참가요령 4항에 의함.

3. 참가인원

가. 학생부: 감독 1명, 선수 7명 이내

나. 일반부: 감독 1명, 선수 7명 이내

(26세 이상 2명, 31세 이상 3명, 41세 이상 2명씩 신청)

4. 경기방법

가. 토너먼트 경기로 4인제 3세트(2선승제)로 진행한다.

나. 기타사항은 대한족구협회 심판, 경기규칙에 의한다.

다. 일반부 연령별 출전현황

| | | | |
|-----|--------|---------|--------|
| 구 분 | 26~30세 | 31세~40세 | 41세 이상 |
| 인 원 | 1명 | 2명 | 1명 |

5. 채점방법

가. 단체 5위까지 다음과 같이 배점한다.

| | | | | |
|-----|----|----|------|------|
| 등 위 | 1위 | 2위 | 3위 | 5위 |
| 학생부 | 5점 | 4점 | 2.5점 | 1점 |
| 일반부 | 8점 | 7점 | 5.5점 | 2.5점 |
| 팀 수 | 1 | 1 | 2 | 4 |

16. 축구

1. 종 별: 초등학교부(남), 일반부(남)

2. 참가자격

가. 초등학교부는 참가신청지 소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

나. 일반부는 1995.12.31.이전 출생자로서 대회 참가요령 4항에 의함.

3. 참가인원

가. 초등부: 감독, 코치, 주무 외 선수 18명 이내

나. 일반부: 감독, 코치, 주무 외 선수 23명 이내(경기당일 엔트리 23명)

| | | | | | |
|-----|--------|--------|--------|--------|--------|
| 구 분 | 26~30세 | 31~35세 | 36~40세 | 41~45세 | 46세 이상 |
| 인 원 | 6명 | 5명 | 4명 | 4명 | 4명 |

4. 경기방법

가. 토너먼트 경기로 진행한다.

나. 예선전부터 결승전까지 전·후반 종료 시에 무승부일 경우 연장전 없이 승부차기로 승패를 결정한다.

다. 기타사항은 대한축구협회 심판, 경기규칙에 의한다.

라. 연령별 출전가능 인원

| | | | | | |
|-----|--------|--------|--------|--------|--------|
| 구 분 | 26~30세 | 31~35세 | 36~40세 | 41~45세 | 46세 이상 |
| 인 원 | 4명 | 3명 | 2명 | 1명 | 1명 |

5. 채점방법: 단체 5위까지 다음과 같이 배점한다.

| | | | | |
|-----|----|----|------|------|
| 등 위 | 1위 | 2위 | 3위 | 5위 |
| 배 점 | 8점 | 7점 | 5.5점 | 2.5점 |
| 팀 수 | 1 | 1 | 2 | 4 |

17. 탁구

1. 종 별

- 가. 단체전: 초등학교부(남·여), 일반부
 나. 개인전: 남자 초등부, 여자 초등부, 일반부

2. 참가자격

- 가. 초등학교부는 참가신청지 소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
 나. 일반부는 1995.12.31.이전 출생자로서 참가요령 4항에 의함.

3. 참가인원

- 가. 단체전
 - 초등학교부는 감독, 코치, 주무 외 선수 6명 이내
 - 일반부는 감독, 코치, 주무 외 선수 7명 이내(최고연령 후보 1명 포함)
 나. 개인전: 남자 초등부 1명, 여자 초등부 1명, 일반부 1명씩 참가하되
 단체전 참가선수에 한하여 참가할 수 있다.

4. 경기방법

- 가. 초등학교부는 단체전(5단식 2복식) 토너먼트 경기로 진행함
 나. 일반부는 단체전(4단식 1복식) 토너먼트 경기로 진행(연령별 대진)
 - 1조와 2조는 교차 출전 가능, 4조와 5조는 교차 출전 가능

| 1조(단식) | 2조(단식) | 3조(복식) | 4조(단식) | 5조(단식) |
|--------|--------|----------------------|--------|--------------|
| 26~40세 | 41~50세 | 남:46세 이상 여:36세 이상 | 51~60세 | 61세 이상 |
| 1명 | 1명 | 2명 | 1명 | 2명 (후보1명) |

- 다. 개인전: 남자초등부, 여자초등부, 일반부 각 1명 토너먼트 게임
 - 개인전 일반부 선수는 51세 이상으로 한다.
 라. 출전선수 유니폼 착용
 - 반바지, 반팔 상의, 선수 이름표 부착(등판)
 마. 기타사항은 대한탁구협회 심판, 경기규칙에 의한다.

5. 채점방법

| 등 위 | 1위 | 2위 | 3위 | 5위 |
|-------|------|----|------|------|
| 단 체 전 | 8점 | 7점 | 5.5점 | 2.5점 |
| 개 인 전 | 2.5점 | 2점 | 1.5점 | 1점 |
| 팀 수 | 1 | 1 | 2 | 4 |

18. 태권도

1. 종 별: 초등학교부(남), 중학교부(남), 고등학교부(남)

2. 체 급: 30체급

| 체 급 | 남자초등학교부 | 남자중학교부 | 남자고등학교부 |
|-------|----------------|----------------|----------------|
| 핀 급 | 32kg까지 | 41kg까지 | 54kg까지 |
| 플라이급 | 32kg 초과 34kg까지 | 41kg 초과 45kg까지 | 54kg 초과 58kg까지 |
| 밴 텀 급 | 34kg 초과 36kg까지 | 45kg 초과 49kg까지 | 58kg 초과 63kg까지 |
| 페 더 급 | 36kg 초과 39kg까지 | 49kg 초과 53kg까지 | 63kg 초과 68kg까지 |
| 라이트급 | 39kg 초과 42kg까지 | 53kg 초과 57kg까지 | 68kg 초과 74kg까지 |
| L 웰터급 | 42kg 초과 45kg까지 | 57kg 초과 61kg까지 | × |
| 웰 터 급 | 45kg 초과 49kg까지 | 61kg 초과 65kg까지 | 74kg 초과 80kg까지 |
| L 미들급 | 49kg 초과 53kg까지 | 65kg 초과 69kg까지 | × |
| 미 들 급 | 53kg 초과 57kg까지 | 69kg 초과 73kg까지 | 80kg 초과 87kg까지 |
| L 헤비급 | 57kg 초과 61kg까지 | 73kg 초과 77kg까지 | × |
| 헤 비 급 | 61kg 초과 | 77kg 초과 | 87kg 초과 |
| 계 | 11 | 11 | 8 |

3. 참가자격

가. 임원은 당해연도 경기규칙을 수료한 자

나. 선수는 참가신청지 소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
국기원 유품, 단증 소지자

4. 참가인원: 각부별 감독 1명, 코치 1명 외 체급별 선수 1명

5. 경기방법: 토너먼트식 개인전

6. 경기시간

가. 초등, 중등부: 매회 2분 3회전경기(중간휴식 1분)

나. 고등부 : 매회 3분 3회전경기(중간휴식 1분)

7. 채점방법: 체급별 5위까지 다음과 같이 배점한다.

| 등 위 | 1위 | 2위 | 3위 | 5위 |
|-----|----|----|------|------|
| 배 점 | 8점 | 7점 | 5.5점 | 2.5점 |
| 인 원 | 1 | 1 | 2 | 4 |

19. 테니스

1. 종 별

가. 남자: 일반부

나. 여자: 일반부

2. 참가자격: 1995.12.31.이전 출생자로서 대회 참가요령 4항에 의함.

3. 참가인원

가. 감독, 코치, 주무 외 선수 12명 이내(후보 선수 2명 포함)

나. 후보 선수는 3복식 연령대 후보 1명, 5복식 연령대 후보 1명 포함
다. 3복식 연령대 후보는 1, 3복식만 참가 가능, 5복식 연령대 후보는 모든 경기 참가 가능

4. 경기방법

가. 단체전(5복식) 토너먼트 경기로 진행함

- 1, 3복식 선수출신 참가 가능 / 2, 5복식 선수출신 참가 불가 /
4복식 선수출신 1명만 참가 가능

(선수출신: 대한테니스협회 및 대한정구연맹에 초등학교 이상 선수 등록 이력이 있는 자)

| 구분 | 1복식 | 2복식 | 3복식 | 4복식 | 5복식 |
|----|--------|--------|--------|--------|--------|
| 남자 | 26~30세 | 31~40세 | 41~50세 | 51~60세 | 61세 이상 |
| 여자 | 26~30세 | 31~35세 | 36~45세 | 46~55세 | 56세 이상 |
| 인원 | 2명 | 2명 | 3명 | 2명 | 3명 |

5. 채점방법: 단체5위까지 다음과 같이 배점한다.

| | | | | |
|-----|----|----|------|------|
| 등 위 | 1위 | 2위 | 3위 | 5위 |
| 배 점 | 8점 | 7점 | 5.5점 | 2.5점 |
| 팀 수 | 1 | 1 | 2 | 4 |

비채점 경기종목별 참가요령

1. 그라운드골프

1. 종 별(분야): 단체전, 개인전

2. 참가자격: 각 시군체육회 및 그라운드골프협회에 등록된 동호인

3. 참가인원: 시군별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10명(남자6명, 여자4명) 이내

4. 경기방법

가. 표준코스 8홀 2라운드(16홀) 실시 합계 타수에 의한 개인전

나. 그라운드(16홀) 연속 진행

다. 점수기록은 기록자가 함

라. 라운드 종료 후 기록 책임자는 기록지에 각자 점수 확인란에 서명하여 본부석에 제출

마. 조편성은 개회식이 끝난 후 조직하거나 각 시군에서 참가신청서 입수 후 편성

5. 채점방법

가. 8홀 그라운드(16홀) 합계 최저 타순으로 함

나. 동 타수일 경우 홀인수가 많은 선수로 하고 그 이후는 타수가 많은 선수 순으로 그 외는 연장자 순으로 함

다. 종목 종합시상은 부별 획득점수를 모두 합하여 1위, 2위, 3위 시상을 실시하되, 시군 종합득점에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6. 주의 및 기타사항

가. 대회 참가자는 경기당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나. 참가선수의 복장은 각 시군의 형편에 맞게 간편복으로 착용하고, 모자, 공, 마크장갑, 우의 등은 각자 준비한다.

다. 기타 사항은 대한그라운드골프협회 경기 규칙에 따르고, 이외 경기에 관한 모든 사항은 대회 본부 결정에 따른다.

2. 농구

1. 종 별: 일반부(남)

2. 참가자격

가. 대한민국농구협회 회원으로 등록된 자로서 농구 동호인(NABA 홈페이지에 팀 등록 되어 있는 동호인)

나. 특기자(고등학교 이상)로 선수생활을 했던 선수는 코트에 1명 잔류

3. 참가인원: 시군별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12명 이내

| 구분 | 20대 | 30대 | 40대 이상 |
|------|-----------------------|-----------------------|-------------|
| 연령기준 | 1992.1.1.~2001.12.31. | 1982.1.1.~1991.12.31. | 1981.1.1.이후 |
| 참가인원 | 4명 | 4명 | 4명 |

4. 경기방법

가. 단체전 토너먼트 방식으로 FIBA룰을 적용하여 진행함.

나. 연령별 2명 이내로 경기에 출전 가능하며, 선수출신은 쿼터 당 1명만 출전할 수 있다.(선수출신 기준: 중앙회원종목단체에 고등학교 이상 선수등록 이력이 있는 자)

다. 경기시간은 1쿼터 당 7분으로 총 4쿼터로 진행됨(2분 데드타임)

5. 진행방법

가. 경기시간 승자승 무승부 시 3분 연장전

나. 심판구성은 3심제로 한다.

6. 채점방법: 종목시상은 1위, 2위, 3위(2팀)에 대하여 시상한다. 단, 시군 종합득점에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7. 주의 및 기타사항

- 가. 이의 제기 시 배정된 주심에게 주장만 이의제기 가능 그 외의 선수나 코치 등이 이의제기를 하여 게임에 방해될 시 몰수 패 처리함.
- 나. 부정선수 발견 시 몰수 패(부정선수의 기준은 등록되지 않은 선수)
- 다. 게임출전 시 쿼터 당 선수출신 1인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그 외의 등록되어 있는 선수가 출전 기준으로 인한 반칙은 테크니컬 파울을 적용하고 규정에 맞춰 선수교체 후 경기를 진행함.
- 라. 관계자 및 응원단의 과격한 행위로 인한 게임 방해 시 퇴장 시킬 수 있음.
- 마. 경기시간 시작 후 7분 이내에 팀원 도착하지 않을시 몰수 패 처리함.
- 바. 참가선수는 소속 시군 유니폼 및 복장 통일해야 함.(통일되지 않는 유니폼을 착용한 선수는 경기에 참가할 수 없음)
- 사. 안경 착용은 절대 불가(콘택트 렌즈 또는 스포츠 고글 착용)
- 아. 경기당일 출전선수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 자. 기타 사항은 FIBA 경기규칙에 따른다.

3. 댄스스포츠

1. 종 별(분야)

- 가. 개인전: 일반부, 장년부
- 나. 단체전

2. 참가자격

- 가. 2020 충청남도체육대회 공통 참가규정에 의하고, 2001.12.31.이전 출생자로서 참가요령 4항에 의함.
- 나. 중앙회원종목단체에 등록된 선수 및 시군 소속 지도자는 출전할 수 없음.

3. 참가인원: 감독 1, 코치 1, 선수 24명 이내

- 가. 개인전
 - 일반부: 20세 이상의 일반인
 - 장년부: 46세 이상의 일반인(파트너 중 나이 많은 기준)
- 나. 단체전(포메이션): 5개조 이상으로 팀을 구성해야 함
 - 20세 이상의 일반인

4. 경기방법

- 가. 참가 신청자는 전원 예선경기에 출전해야 함
- 나. 종목 구분별 8개조 이하일 때는 바로 결승
- 다. 개인전 참가자는 중복출전을 할 수 없다.(라틴과 모던 합해서 1회만 허용 중복출전 시 부정선수로 간주하여 점수에 반영이 안 됨)
- 라. 등록선수 주민등록증 지참(본인확인, 대회출전 시 참가선수 엔트리에 없는 사람은 참가할 수 없음)
- 마. 포메이션은 대표 한 팀을 포기해주기 바람. 나머지 팀은 번외경기임.

5. 경기시간

가. 리허설 및 예선: 종목당 1분 10초

나. 본선경기(개인전): 종목당 1분 30초

다. 단체전(포메이션): 본선 4분 이내(4분 이상일 때 감점)

6. 채점방법

가. 개인전 및 단체전은 다음과 같이 배점한다.

| | | | | | | | | | | | | | | | |
|----|-----|-----|-----|-----|-----|-----|-----|-----|----|-----|-----|-----|-----|-----|-----|
| 순위 | 1위 | 2위 | 3위 | 4위 | 5위 | 6위 | 7위 | 8위 | 9위 | 10위 | 11위 | 12위 | 13위 | 14위 | 15위 |
| 점수 | 20점 | 17점 | 15점 | 14점 | 13점 | 12점 | 11점 | 10점 | 9점 | 8점 | 7점 | 6점 | 5점 | 4점 | 3점 |

나. 심사위원 및 심사방법

1) 부분별 9명 이상 심사위원 위촉

(대한민국댄스스포츠연맹 심판자격을 취득한 자)

2) 선수, 코치가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재경기 및 재심사는 진행하지 않으며, 심사 결과를 확인하려면 대회 종료 1주 이후 주최 측(종목단체)에 요구할 수 있다.

3) 심사기준은 총점 100점으로 하며 인원(20점), 통일성(20점), 음악(20점), 안무(20점), 베이직(20점)으로 채점한다.

다. 종목 종합시상은 부별 획득점수를 모두 합하여 1위, 2위, 3위 시상을 실시하되, 시군 종합득점에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7. 주의사항

가. 대회규정

1) 모든 참가선수는 대회 예행연습에 참가해야한다.

2) 대회 시작 전에 도착하여 백넘버를 교부 받아야 한다.

3) 1종목 출전 작품은 기본 베이직 휘겨에 준한다.(2종목 이상은 바레이션 가능)

4) 대회복장

가) 대회복장은 과다노출이나 퇴폐적인 의상은 금한다.

나) 상대에게 피해를 주는 악세서리는 사용할 수 없다.

다) 마루판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슈즈는 신을 수 없다.

라) 모든 선수는 규격화된 댄스용 슈즈를 신어야한다.(필히 힐캡 사용)

5) 대회진행 순서에 따라 선수호명 불참 시에는 탈락으로 처리한다.

6) 행사도중 발생하는 개인적인 질병과 행사 외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주최 측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7) 기타 기록하지 않은 규정은 대한민국 댄스스포츠연맹 또는 국제 통례에 준한다.

8) 부정한 부분에 대하여 대회 감독관에게 이의를 제기한다.

(대회감독관 배정)

나. 대회 운영방침 및 세부심사기준

1) 인원점수는 단체전 선수와 개인전 선수를 모두 포함한 지역대표 선수를 말한다.

2) 단체전 대표팀이 1팀 이상으로 구성된 시군은 상위 성적을 거둔 팀을 기준으로 최종 점수에 반영한다.

3) 대회음악은 생활체육 특성상 모든 장르의 음악을 사용할 수 있다.

4) 안무 구성과 베이직 부분은 심판 제량의 의해 판단하며, 댄스스포츠 대회의 특성상 댄스스포츠 정식종목 외의 댄스에 대해서는 실격처리 한다.

5) 대회당일 참가선수 인원파악에 대한 총점은 총괄 심판위원장이 최종 관리 감독 및 채점한다.

6) 시군 대표선수 외 선수는 인정하지 않는다.(시군대표선수 외 출전 시 부정선수로 간주하고 체육회 또는 실업팀에 선수 등록한 자 또한 부정선수로 간주하여 실격 처리한다.)

다. 경기음악

1) 국제대회에서 공인된 음악속도를 고려하여 대회 주최 측에서 선별 하여 사용

2) 단체전(포메이션)은 대회당일 주최 측에 준비된 CD를 제출(각 팀 대표)

4. 산악(등산)

1. 종 별

- 가. 개인전: 일반부
- 나. 단체전: 혼성부, 개인전

2. 참가자격

- 가. 시군 산악연맹에 가입되어 있는 등산 단체 및 클럽으로 해당 시군 연맹 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
- 나. 대회 규정 및 규칙 등을 준수할 수 있는 자

3. 참가인원

- 가. 시군별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14명 이내
- 나. 참가인원
 - 1) 단체전: 청년부 5명(여성 2명 이상), 장년부 5명(여성 2명 이상)
 - 2) 개인전: 4명(청년부/장년부 남·여 각1명씩)
 - 3) 부별 연령기준
 - 가) 청년부: 26~50세
 - 나) 장년부: 51세 이상

4. 경기방법

- 가. 시군별 팀 대항전
- 나. 각 시군 산악연맹은 전 종목별 1개 팀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 다. 지정코스 완주(각 심판 포스트 경유 확인)
- 라. 등산 출발 2시간 이후~3시간 30분 이내 골인을 평가 기준 한다.

5. 채점방법

- 가. 각 부문별 참가선수는 등산로에 지정된 각 포스트 통과 시 심판위원의 확인 및 평가를 종합 합산하여 완주한 팀으로 순위 결정
- 나. 종목 종합시상은 부별 획득점수를 모두 합하여 1위, 2위, 3위 시상을 실시하되, 시군 종합득점에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6. 주의 및 기타사항

- 가. 등산 경기 중 개인이 필요한 준비물은 각 개인이 지참.
(중식, 식수, 음료, 간단한 구급대책, 기타)
- 나. 등산경기 중 발생한 쓰레기와 오물은 버리지 말고 최초 출발지점까지 운반한다.
- 다. 시군 선수 및 일반산행 참가자는 사전 등록된 인원내 한하여 대회에 참가 할 수 있다.
- 라. 참가자는 산불예방에 대한 조치와 준비를 해야 한다.
(인화물질 휴대금지)
- 마. 시상(순위)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할 경우 시군산악연맹 회장 또는 시군 전무이사(사무국장)를 통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점수열람)
- 바. 경기당일 출전선수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 사. 기타 사항은 대한산악연맹 경기규칙에 의한다.

5. 승마

1. 종 별(분야)

| 종별 | 구분 | 경기종목 | 비고 |
|------|-------|---------------|----|
| 일반부 | 개인전 | 장애물(80cm) | |
| | | 장애물(100cm) | |
| | | 마장마술(F class) | |
| | | 권승(여자부) | |
| | 평보경속보 | | |
| | 단체전 | 릴레이 | |
| 시니어부 | 개인전 | 권승 | |

2. 참가자격

- 가. 선수는 대회 개최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군승마협회를 거쳐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 나. 선수는 본 협회(충남도) 회원등록을 필한 단체, 시군에서 활동하는 자
- 다. 일반부 26세 이상 출전 가능, 시니어 61세 이상 출전 가능
- 라. 마 필: 국산마, 외산마

3. 참가인원

- 가. 시군별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13명 이내
- 나. 후보 선수 및 예비 마는 3명(두)/선택 할 수 있다.

| 내용 | 참가 구분 |
|-----------------|--------------------------|
| ■ 장애물(80cm) | 2명 출전가능 (1인 2마, 1마2인) |
| ■ 장애물(100cm) | |
| ■ 마장마술(F class) | |
| ■ 권승(여성) | 2명 출전가능 (1인 1마) |
| ■ 권승(시니어) | |
| ■ 평보경속보 | <장애물 선수는 출전 제외> |
| ■ 릴레이 | 혼성 3인(남2, 여1) |

4. 경기방법

가. 장애물경기

- 1) 장애물 경로도는 경기위원회에서 작성하여 경로답사 직전에 배부하거나 경로설계자의 설명으로 대체한다.
- 2) 복장은 공인승마대회(kef) 규정에 준한다.
- 3) 경기규정은 대한승마협회 규정에 준한다.

나. 마장마술경기

- 1) 복장 및 마구규정은 공인승마대회(kef) 규정에 준한다.
- 2) 마장마술 F class 과목을 실시한다.

다. 권승경기

- 1) 권승경기 경로도와 설명서를 배부한다.

라. 평보 경속보 경기

- 2) 경로도와 설명서를 배부한다.

마. 릴레이경기

- 1) 경로도를 기준으로 설계되나 경기장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 2) 선수구성은 혼성팀으로 3명(남자 2명, 여자 1명)으로 구성한다.
 - 가) 장애물 낙하 시 다음 반환을 두 바퀴 돌아야 한다.
 - 나) 경기 중 반환점 전도하거나 경로 이탈하면 실권이다.
 - 다) 경기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한다.
 - 라) n형 손잡이가 장착된 안장 사용을 금지한다.
 - 마) 선수 및 말 보호차원에서 채찍 및 박차 이중등자, 드로레인, 사이드레인, 삼본, 고그, 사용을 금지한다.

5. 채점방법

가. 개인전 경기는 등위에 관계없이 시군별 상위입상자 1명을 대상으로 하여 최상위 시군을 15점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1점씩 감산하여 채점한다.

나. 릴레이 경기는 최상위 시군을 30점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2점씩 감산하여 채점한다.

다. 종목 종합시상은 부별 획득점수를 모두 합하여 1위, 2위, 3위 시상을 실시하되, 시군 종합득점에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6. 주의 및 기타사항

가. 장애물, 마장마술은 흰색 승마복에 흰 카라가 달린 셔츠, 흰색 넥타이를 착용하여야 한다.

나. 대회기간 중 말 부상이나 말 학대 행위 시 실격 처리한다.
(임시마방, 연습경기장 포함)

다. 장애물 높이와 폭 및 수는 제반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가능하다.

라. 경기에 참가한 선수 및 임원은 심판부의 판정에 대하여 반박할 수 없다.
(시군 대표자만 서면으로 이의 소청할 수 있다)

바. 말에 대한 어떠한 경우의 사고도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다.

6. 자전거

1. 종 별

가. 남자: 일반부(MTB), 일반부(도로)

나. 여자: 일반부(MTB), 일반부(도로)

2. 참가자격

가. 2020 충청남도체육대회 공통 참가요강에 의하고, 2001.12.31.이전 출생자로서 참가요령 4항에 의함.

나.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선수는 현역 은퇴 후 3년이 지나야 참가 가능

3. 참가인원

가. 시군별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8명 이내

나. 팀 구성 기준

| 종별 | 부별 | 참가연령 | 인원(명) |
|-----|--------|--------|-------|
| 남자부 | 시니어 | 20~40세 | 1 |
| | 베테랑 | 41~50세 | 1 |
| | 마스터 | 51~60세 | 1 |
| | 그랜드마스터 | 61세 이상 | 1 |
| 여자부 | 장미부 | 20~40세 | 1 |
| | 백합부 | 41~50세 | 1 |
| | 국화부 | 51~60세 | 1 |
| | 무궁화부 | 61세 이상 | 1 |

4. 경기방법

가. MTB경기와 도로경기는 건 방식으로 진행되며, 결승점 골인 순위에 따라서 순위를 결정한다.

나. 경기기록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경기기록이 게시된 후 30분 내에 대회 본부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 양식에 의거 서면으로 심판위원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구두항의는 일체 불허한다.

다. 도로 경기 중 자동차나 오토바이로 선수를 유도하거나 이끌면 해당 선수는 실격처리 한다.

- 라. 코스는 심판의 유도에 따라야 하며, 선수도 코스를 알아야 할 의무가 있으며, 코스를 이탈하여 순위의 변동(기록 단축)을 준 경우에는 실격처리 한다.
- 마. 타인의 배 번호를 무단으로 달고 경기에 참가할 경우 발견 즉시 실격처리 한다.
- 바. 타 선수의 진로를 고의로 방해하였다고 인정될 시 1차 경고, 2차 패널티, 3차 실격 처리
- 사. 기계 고장 시 본인의 휴대공구로 직접 처리해야 하며, 위반 시 실격 처리
- 아. 등급별 참가인원이 6명 미만일 경우 타 등급(하위 연령대)과 통합하여 진행한다. 단, 최하위 연령대가 6명 미만일 경우에는 위 연령대와 통합한다.

5. 채점방법

- 가. 경기종목별 1~3위까지 채점하며 골인순위로 결정한다.
- 나. 입상점수는 1위(5점), 2위(3점), 3위(1점)으로 한다.
- 다. 종합점수는 MTB경기와 도로경기의 각 개인별 획득 입상점수를 모두 합하여 집계한다.
- 라. 종목 종합시상은 부별 획득점수를 모두 합하여 1위, 2위, 3위 시상을 실시하되, 시군 종합득점에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6. 주의 및 기타사항

- 가.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는 헬멧은 필히 착용한다.(미착용자는 참가할 수 없음)
- 나. 참가선수는 지정된 위치에 배 번호를 부착해야 한다.
 - 1) 자전거용 배 번호: 핸들 바 앞부분
 - 2) 선수착용 배 번호: 등판 아랫부분 오른쪽 허리 위
- 다. 본 요강 이외의 사항은 대회 운영상 주최(종목) 측 결정에 따른다.
- 라. 경기당일 출전선수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 마. 기타 사항은 대한자전거연맹 경기규칙에 의한다.

7. 체조(에어로빅스체조)

1. 종 별: 학생부, 일반부, 노년부

2. 참가자격

- 가. 충청남도체조협회 생활체조 동호인으로 시군체육회 및 종목별협회에 등록된 동호인클럽 또는 단체로서 해당 시군협회의 추천을 받은 자.
- 나. 학생부는 참가신청지 소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
- 다. 일반부는 2001.12.31.이전 출생자로서 대회 참가요령 4항에 의함.
- 라. 노년부는 1961.12.31.이전 출생자로서 대회 참가요령 4항에 의함.

3. 참가인원

- 가. 시군별 감독 1명, 선수 25명 이내
- 나. 팀 구성 기준
 - 1) 세부종목(2개 분야)
 - 건강 체조(에어로빅, 기구체조, 민속체조 및 수련체조),
 - 생활댄스 체조(재즈, 힙합, 방송댄스, 발리댄스, 포메이션 댄스 등)
 - 2) 참가종별: 학생부, 일반부, 노년부(61세 이상)
- 다. 팀 구성은 시군별 실정에 맞게 25명 이내에서 자유롭게 한다.
- 라. 세부종목에 시군별 1개 팀만 참가 가능하며, 팀당 1종목만 참가 가능

4. 경기방법

- 가. 경기운영은 대회장의 명을 받은 운영위원장의 주도하에 대회조직 위원회의 임원이 주관 한다.
- 나. 경기시간은 팀당 4분 이내로 하고, 입·퇴장 시 별도의 음악사용은 금한다.(시간 초과 시 5초당 -1점 감점)
 - ※ 단, 국민건강 체조는 6분(경기시간만 적용)으로 정함.

- 다. 부별 규정 인원은 일반부와 노년부는 8명 이상, 학생부는 5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며, 규정 인원보다 적게 참가한 경우 1명당 1점씩 감점을 한다.
- 라. 본 대회에 참가한 모든 선수의 이의제기는 해당 시군협회장을 통해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제기된 이의는 대회 본부가 심의하여 결정하며, 각 팀은 어떠한 결정에도 순응해야 하고 이에 불응 시 해당 팀은 실격으로 한다.
- 마. 경기 도중 사고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경기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본 회의 결정에 따른다.

5. 채점방법

- 가. 심사위원(5명)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점으로 한다.
- 나. 동점일 경우
 - 1) 5명의 심사위원 총합계 점수가 가장 높은 팀
 - 2) 1)항이 같을 경우 참가인원이 많은 팀
 - 3) 2)항까지 같을 경우 장애인-노인-학생-일반부 속한 팀
- 다. 채점의 모든 가·감점은 평균 점수에서 계산된다.
- 라. 입상점수

| | | | | | | |
|----|----|----|----|----|----|----|
| 순위 | 1위 | 2위 | 3위 | 4위 | 5위 | 6위 |
| 점수 | 6점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 마. 종목 종합시상은 부별 획득점수를 모두 합하여 1위, 2위, 3위 시상을 실시하되, 시군 종합득점에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6. 주의 및 기타사항

- 가. 경기 운영을 방해하는 자, 폭력을 행사하는 자, 선수들을 방해하는 행동을 한 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즉시 퇴장조치하며 소속팀의 경기를 몰수처리 한다.

- 나. 경기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경기에 불응할 경우 잔여 경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 다. 참가팀에 의해 10분 이상 경기 지연 시 실격처리 한다.
- 라. 경기 결과에 대한 제소는 해당 종별이 종료된 후 30분 내에 이의 신청서 양식에 의거 서면으로 심판위원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구두항의는 일체 불허한다.
- 마. 경기당일 출전선수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 바. 기타 사항은 대한체조협회 생활체조분과 경기규칙에 의한다.

8. 파크골프

1. 종 별

가. 개인전: 일반부(남, 여), 시니어부(남, 여)

나. 단체전: 3개부(남자부, 여자부, 임원부)

2. 참가자격: 1960.12.31.이전 출생자로 시군파크골프협회 회원으로서
대한파크골프협회에 등록된 자

3. 참가인원: 시군별 감독 1, 코치 1, 선수 14명 이내

| 종별 | 구분 | 계 | | 남자 | 여자 |
|---------|----|-----------------|-----|--------|----|
| 계 | | 7종목 | 16명 | | |
| 임원 | | 2 | 2 | | |
| 일반부 개인전 | 남자 | 61~70세 | 2 | 2명 | |
| 시니어 개인전 | | 71세 이상 | 2 | 2명 | |
| 일반부 개인전 | 여자 | 61~65세 | 2 | | 2명 |
| 시니어 개인전 | | 66세 이상 | 2 | | 2명 |
| 단체전(포섬) | 남자 | 남: 71세 이상1. 미만1 | 2 | 2명 | |
| | 여자 | 여: 66세 이상1. 미만1 | 2 | | 2명 |
| | 혼성 | 시군회장, 사무국장 | 2 | 성별구분없음 | |

4. 경기방법

가. 개인전: 18홀 개인 타수 경쟁 적용

나. 단체전: 18홀 타수 경쟁 적용

다. 조편성

- 개인전: 1조 최대 4명 남, 여 별도 편성

- 단체전: 1조 최대 4팀 4개조 편성

5. 채점방법

가. 부별로 구분하여 타수가 적은 순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단, 동타 일 경우 서든데스 방식 적용.

나. 동일 시군 소속 선수가 순위에 동시에 포함될 경우에는 모두 인정다. 점수배점

| 구 분 | 1위 | 2위 | 3위 | 4위 | 5위 |
|-----|----|----|----|----|----|
| 개인전 | 7점 | 6점 | 5점 | 4점 | 3점 |
| 단체전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라. 종목 종합시상은 부별 획득점수를 모두 합하여 1위, 2위, 3위 시상을 실시하되, 시군 종합득점에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6. 주의 및 기타사항

가. 대회일정을 고려하여 경기시작 전 도착하지 않은 선수는 불참으로 처리한다.

나. 본 회 경기규정을 우선 원칙으로 하며, 대회전에 공지한 로컬룰을 적용받는다.

다. 경기 시 부적격자 참가 또는 부정행위 시는 해당자에 한하여 실격한다.

라. 경기 중 및 순위결과에 대해 문의사항은 시·군별 감독만이 할 수 있다. 특히, 선수가 심판에 대한 폭언 및 욕설을 할 경우, 해당 시·군은 대회본부 결정에 의거 실격 처리한다.

마. 경기당일 출전선수는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바. 기타 사항은 대한파크골프협회 경기규칙에 의한다.

9. 패러글라이딩

1. 종 별(분야)

- 가. 남자: 조종사부(정밀착륙), 연습조종사부(정밀착륙)
- 나. 여자: 여성부(정밀착륙)

2. 참가자격

- 가. 2020 충청남도체육대회 공통 참가요강에 의하고, 2001.12.31.이전 출생자로서 참가요령 4항에 의함.
- 나. 충남패러글라이딩협회 등록 회원으로서 자격증 소지에 한함.

3. 참가인원

- 가. 시군별 감독 1명, 코치 3명, 선수 18명 이내
- 나. 부별 참가 인원은 조종사부 7명, 연습조종사부 7명, 여성부 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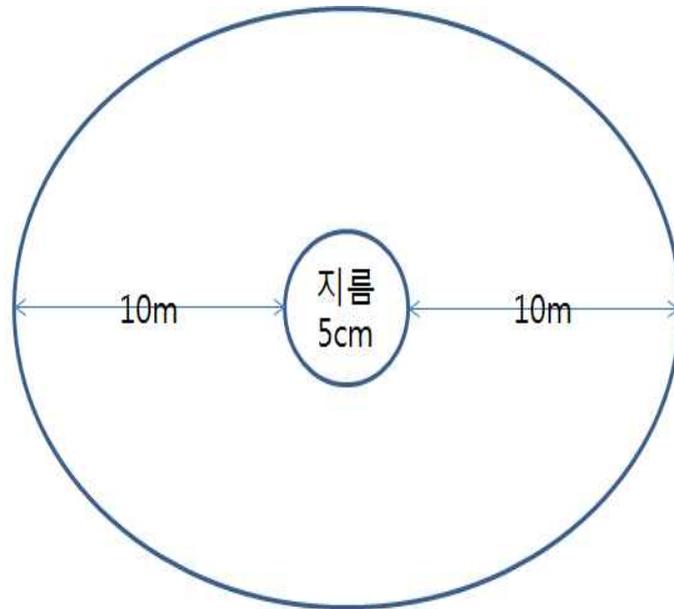
4. 경기방법

- 가. 본 대회는 조종사부, 연습조종사부, 여성부 시군대항으로 이루어진다.
- 나. 이륙
 - 1) 이륙 방법은 기상에 따라 연습조종사부, 조종사부, 여성부 순으로 이륙한다.
 - 2) 이륙장 진입 후에는 이륙심판관 이륙신호 지시 후 1분 이내에 출발해야 하며, 이륙 포기 시에는 참가자 중 가장 뒤에서 이륙해야 한다.
 - 3) 이륙 실패 시 재이륙이 가능하나 즉시 이륙 불가능 시에는 가장 뒤로 물러난다.
- 다. 비행 시 모든 비행자는 비행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 라. 착륙
 - 1) 착륙은 지정된 착륙장에 착지할 경우에만 그 점수가 부여된다.

- 2) 지정된 주 착륙장 이외의 다른 지역에 착륙한 선수에 대해서는 당일 점수를 0점 처리한다.
- 3) 착륙장 상공에서 팁 스톨, B스톨 외에는 일체 다른 행위로 고도 처리를 할 수 없으며 해당 행위는 0점 처리한다.
- 4) 착륙한 선수는 즉시 기체를 회수하여 착륙장 가장자리로 옮겨 놓은 다음 착륙장 심판에게 가서 착륙 확인 서명을 해야 한다.

5. 채점방법

가. 정밀착륙



- 나. 5cm 원판 착륙: 1,000점 부여(단, 동체착륙 시 실격 처리함)
- 다. 10m 이내 착륙 시 1cm 거리차로 -1점씩 감산 부여
- 라. 각 시군별 참가선수의 개인별 획득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순위 산정 (단, 동점일 경우 해당 팀 간의 조종사급 고득점자의 점수로 판정)
- 마. 종목 종합시상은 부별 획득점수를 모두 합하여 1위, 2위, 3위 시상을 실시하되, 시군 종합득점에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6. 주의 및 기타사항

가. 선수

- 1) 대회 기간 중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 2) 모든 선수는 헬멧, 무전기, 보조 낙하산을 반드시 착용하고 기체는 반드시 국제공인 감행기구 합격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 3) 모든 선수는 공중에서 비행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 4) 비행 시 타선수의 비행에 방해가 되었을 시 그 행위가 고의적으로 판명될 시에는 실격처리 한다.

나. 심판진 구성과 임원

1) 심판장: 경기위원장

- 가) 심판장은 모든 심사위원을 관리 감독 한다.
- 나) 심사 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2) 이륙장심판: 4명(공인심판 1명 외 기록 1명, 보조요원 2명)

- 가) 이륙장에서의 모든 통제권을 갖는다.
- 나) 비행 시작 전에 기상, 비행, 장애물에 대한 브리핑을 통보해야 한다.
- 다) 경기 시작 전에 WIND DUMMY를 비행시켜야 한다.
- 라) 선수들의 안전한 이륙이 될 수 있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 마) 심사위원회 위원이 된다.

3) 착륙장 심판: 5명(공인심판 2명 외 기록 2명, 보조요원 1명)

- 가) 착륙장에서의 모든 통제권을 갖는다.
- 나) 착륙장의 기상을 수시로 이륙장에 통보해야 한다.
- 다) 착륙장에 윈드색을 바람이 가장 잘 불고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한다.
- 라) 심사위원회 위원이 된다.

4) 심사위원회

- 가) 심사위원회 구성 범위는 심판장 2명 이착륙장 심판 4명으로 구성한다.
- 나)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판정에 필요한 인원을 소집 할 수 있다.

다) 판결은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위원장이 한다.

라) 선수의 이의 신청 및 실격 항의 시 심사위원장이 심사위원이 된다.

다. 경기진행 결과

1) 대회는 1회 비행으로 이루어진다.

2) 악기상의 계획

가) 악 기상으로 경기진행이 어려울 경우 총 참가 선수의 30% 이상 이륙 완료시에는 경기 유효함.

나) 경기 진행 중 악기상이 일시적으로 있을 경우 기상이 호전 될 때까지 진행 시간을 연장하면서 일시중지 할 수 있다.

다) 기상관계로 인하여 비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지에서 운용 위원 회의를 거쳐 대체 경기방법을 결정한다.

3) 악기상의 조건

가) 강우시

나) 안개로 인하여 시정이 흐릴 경우

다) 풍 속: 25KM/H 이상 시

라) 가스트: 25KM/H 이상 시

마) 풍 향: 좌우 45°도 이상 및 배풍 시

라. 참가 선수는 주최 측이 제시하는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참가 선수는 비행 안전수칙과 대회 규정을 철저히 준수한다.

바. 경기 당일 출전 선수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사.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최 측 위원회의 지시에 따른다.

10. 합기도

1. 종 별: 남자부, 여자부

2. 참가자격: 대회 개최 3개월(90일) 이전에 해당 시군에 편승된 자로써,
시군대표 선수로 선발되어 각 시군협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

3. 참가인원

가. 시군별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14명 이내(호신술보조자 4명 포함)

나. 종목별 참가기준

| 종 목 | 경기구분 | 인원 | 남·여/연령 | 세부종목 기준 |
|-------|-----------|----|-----------|---|
| 제1종목 | 호신술경기 | 1명 | 남자/15세 이상 | 손목수, 의복수 중 호신술 4수 선택 |
| 제2종목 | 호신술경기 | 1명 | 남자/15세 이상 | 방권술, 방족술, 방검술 중 호신술 4수 선택 |
| 제3종목 | 호신술경기 | 1명 | 남자/31세 이상 | 손목수, 의복수, 앞, 뒤수, 좌수, 방권술, 방족술, 방투술, 방검술 등 호신술 4수 선택 |
| 제4종목 | 호신술경기 | 1명 | 남자/41세 이상 | 손목수, 의복수, 앞, 뒤수, 좌수, 방권술, 방족술, 방투술, 방검술 등 호신술 4수 선택 |
| 제5종목 | 호신술경기 | 1명 | 남자/51세 이상 | 손목수, 의복수, 방권술, 방족술, 방검술 등 호신술 4수 선택 |
| 제6종목 | 호신술경기 | 1명 | 여자/15세 이상 | 손목수, 의복수 중 4수 |
| 제7종목 | 호신술경기 | 1명 | 여자/31세 이상 | 손목수, 의복수, 방권술, 방족술, 방검술 등 호신술 4수 선택 |
| 제8종목 | 호신술경기 | 1명 | 여자/41세 이상 | 손목수, 의복수, 방권술, 방족술, 방검술 등 호신술 4수 선택 |
| 제9종목 | 기록경기(낙법) | 1명 | 남자/15세 이상 | 길이낙법 2회 측정 |
| 제10종목 | 기록경기(발차기) | 1명 | 남자/15세 이상 | 두발모아 높이차기 2회 측정 |

4. 경기방법

- 가. 경례의 구호는 “합기” 로 한다.
- 나. 호신술경기 1~8종목은 토너먼트경기를 한다. 9조목~10종목은 전체 참가 선수 중 기록이 높은 순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 다. 청·홍 선수는 1회에 1수씩 3회를 시연하고, 마지막 4수는 비교술기를 한다.
- 라. 호신술경기는 허구적인 술기는 배제를 하고 호신술기의 연결 수는 4수 까지 허용되며, 5수 이상의 연결술기는 실격 처리한다.(치기 및 처리술기도 1수로 본다.)
- 마. 경기에 필요한 개인용품은 선수 본인이 준비해야한다.
- 바. 기타 사항은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 경기규정에 따른다.

5. 채점방법

가. 호신술종목(1~8종목): 종목별 5위까지 다음과 같이 배점한다.

| | | | | |
|-----|----|----|------|------|
| 등 위 | 1위 | 2위 | 3위 | 5위 |
| 배 점 | 8점 | 7점 | 5.5점 | 2.5점 |
| 인 원 | 1 | 1 | 2 | 4 |

나. 기록종목(9~10종목): 종목별 8위까지 다음과 같이 배점한다.

| | | | | | | | | |
|-----|----|----|----|----|----|----|----|----|
| 등 위 | 1위 | 2위 | 3위 | 4위 | 5위 | 6위 | 7위 | 8위 |
| 배 점 | 8점 | 7점 | 6점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 인 원 | 1 | 1 | 1 | 1 | 1 | 1 | 1 | 1 |

다. 종목 종합시상은 부별 획득점수를 모두 합하여 1위, 2위, 3위 시상을 실시하되, 시군 종합득점에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충청남도체육대회 관련 규정

충청남도종합체육대회 규정

제정 2018. 11. 15.

제1장 총 칙

제1 조(목적 및 개최근거) ① 충청남도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규약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종합체육대회를 매년 도내에서 개최한다.

② 종합체육대회는 모든 도민에게 스포츠를 보급하고, 스포츠정신을 고취하여 도민의 체위를 향상시키며 지역체육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고, 명랑하고 질서 있는 사회기풍을 조성하여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체육대회”라 함은 체육회가 주최하는 충청남도체육대회, 충청남도어르신생활체육대회를 말한다.

2. “충청남도체육대회”라 함은 체육회에 가입된 회원종목단체 중 일부 종목의 학생부, 일반부를 대상으로 일정 장소에 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경기를 진행하는 대회를 말하며, 약칭은 “충남체전”으로 한다.

3. “충청남도어르신생활체육대회”라 함은 체육회에 가입된 회원종목단체 중 일부 종목의 60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일정 장소에 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경기를 진행하는 대회를 말하며, 약칭은 “충남어르신체전”으로 한다.

제3 조(종합체육대회에 관한 권리) 체육회는 종합체육대회의 조직,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과 개·폐회식, 주경기장과 모든 경기장 내에 설치되는 광고에 대하여 독점적 권리를 갖는다. 단, 이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지 아니하다.

제4 조(대회 횟수) ① 충청남도체육대회 및 충청남도어르신생활체육대회의 개최 횟수는 당해 연도로 표기한다.

제 5 조(개최시간 및 기간) ① 충청남도체육대회는 매년 상반기 중에 개최하며 대회기간은 4~5일로 한다.

② 충청남도어르신생활체육대회 기간은 1~2일로 한다.

③ 국내 종합체육대회가 도내에서 개최되거나 전국종합체육대회 등 개최시기 및 본회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 6 조(경기행사제한) 충청남도체육대회 개최일 10일 전부터 종료일까지 시·군 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와 그 산하단체는 종목별 경기행사를 개최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체육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7 조(대회상징마크) ① 종합체육대회 대회기의 상징마크는 충청남도 상징마크를 중앙에 두고 월계수 잎의 원으로 제작한다.

② 게양용 대회기는 가로 540센티미터, 세로 360센티미터로 제작하고, 개최지 전달용 대회기는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제작한다.

③ 대회 기간 중에는 대회기를 주경기장에 게양하여야 하며, 개회식시 게양하고 폐회식에 본회 회장에게 반납한다.

제 8 조(대회표어) ① 종합체육대회 표어는 종합체육대회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개최지는 대회표어를 주경기장과 각 종목별 경기장에 게시하되,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9 조(대회가) 종합체육대회 대회기 게양, 개·폐회식 후에는 “충남찬가” 노래를 사용한다.

제10조(대회명칭 등에 관한 권리) 대회명칭, 대회상징마크, 대회표어에 관하여 체육회는 독점적인 지적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타인이 이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체육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종합체육대회위원회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

제11조(대회엠블럼, 대회마스코트 및 대회구호) 개최지는 종합체육대회의 홍보 및 대회특성을 표현하기 위하여 체육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대회엠블럼, 대회마스코트 및 대회구호를 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 2 장 종합체육대회위원회

제12조(설치) 체육회 규약 제37조에 따라 설치 운영하며 그 명칭은 종합체육대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1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의 자문에 응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1. 종합체육대회의 준비에 관한 사항
2. 종합체육대회의 개최지 선정에 관한 사항
3. 종합체육대회의 조직,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4. 기타 종합체육대회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
5. 위 각 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② 위원회에서 결정된 방침은 본회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조직) ①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11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체육업무관련 부지사 및 도 체육업무관련 과장, 도교육청 체육업무관련 과장, 시·군체육회 사무국장 중 1인, 당해 연도 충청남도체육대회 개최지 부단체장, 본회 사무처장으로 한다.

③ 위촉 위원은 본회 이사, 회원종목단체, 학계를 포함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 위원 구성 시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

1. 규약 제30조 제1항에 따라 체육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2.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위원이 될 수 없다.
3.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등록선수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5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서 위원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 원 장 1인
 2. 부위원장 1인
 3. 위 원 11인 이내(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 ② 위원장은 체육업무관련 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촉 위원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체육회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단,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충청남도체육대회 개최지 부단체장의 임기는 당해 충청남도체육대회 종료일 까지 한다.

제3장 개최지 선정

제17조(유치신청) ① 충청남도체육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시·군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개최지의 자치단체장의 보증서와 함께 대회개최 27개월 전에 체육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1. 각종 경기장의 시설현황 및 관람자 수용계획
 2. 경기장 시설계획과 공인을 필요로 하는 경기장은 회원종목단체의 경기장시설 설계에 대한 의견서
 3. 직접 사용되는 소요예산의 조달방법(연차별 예산 확보 및 집행계획 포함)
 4. 보증서(개최지 시장·군수)
 5. 선수단 숙박 및 수송과 관련한 계획
 6. 기타 대회 유치와 관련된 사항
- ② 개·폐회식 경기장이 소재하는 주 개최지는 인구규모, 숙소(호텔 포함) 그리고 그 지역의 기반시설 등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같은 연도에 유치신청한 시·군이 복수일 때에는 3년간의 개최지를 일괄 선정할 수 있다.
- ④ 천재지변 등으로 대회 개최가 불가능할 경우 당해 연도에 대회일정을 연기하여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기가 불가능할 경우 취소 당시의 개최지에서 다음연도에 개최 한다.

제18조(개최지 결정) ① 개최지의 결정은 공모로 하며, 종합체육대회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24개월 전에 개최지를 확정한다.

② 위원회는 유치신청 시·군이 제출한 유치신청서류에 대한 의견청취나 현장 실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에서 실시한 의견청취 및 현장실사 결과를 반영하여 종합체육대회 위원회에서 최종 개최지를 선정한다.

④ 충청남도체육대회 개최지로 선정된 시·군체육회는 차기연도 충청남도어르신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9조(개최지 시군의 의무) ① 충청남도체육대회 개최가 결정된 시·군체육회는 자치단체장과 의회 의장의 결재를 득한 충청남도체육대회 개최 계획서를 개최지가 결정된 후 1개월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승인조건과 제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1항에 의거하여 제출된 계획서의 내용수정, 계획의 변경이 있을시 보안 제안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20조(세부 실행 계획서 승인) 개최가 결정된 시·군 및 체육회는 대회 준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수시로 체육회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개·폐회식 등 중요행사 일정이 포함된 세부 실행 계획서를 대회개최 3개월 전까지 체육회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장 개최지 준비위원회

제21조(준비위원회) ① 종합체육대회 개최 시·군에 대회준비를 위해 준비위원회를 설치한다. 단, 충청남도체육대회 준비위원회는 충청남도어르신생활체육대회 조직위원회를 승계할 수 있다.

제22조(구성시기) 충청남도체육대회 준비위원회는 대회 개최 1년 6개월 이전에, 충청남도어르신생활체육대회 준비위원회는 대회 개최 5개월 전에 구성하여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구성) 준비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약간 명,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되며, 제25조에 명시한 부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24조(위원 등의 선임방법) ①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은 개최지의 자치단체장이 되며, 위원장은 개최 시·군의 시·군체육회장(체육회장이 자치단체장인 경우에는 부회장) 1명을 포함한 부위원장과 위원을 선임한다.

② 준비위원회에는 대회 운영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고문 등을 둘 수 있다.

제25조(집행위원회) ① 준비위원회는 실질적인 대회 준비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개최시·군 관련 인사로 집행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준비위원장이 겸하며, 부위원장은 개최지의 자치단체 부단체장, 개최시·군 교육감 또는 부교육감 및 개최시·군 체육회장(체육회장이 자치단체장인 경우에는 부회장) 또는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이를 임명한다.

③ 집행위원회의 실무부서는 개최지 실정에 맞게 조직하되, 경기부, 식전행사부, 의전초청부, 인력물자부, 홍보부, 자원봉사부, 입퇴장관리부, 안전관리부(질서포함), 교통경비부, 환영안내부를 포함하여야 한다.

④ 실무부서의 장의 직급은 개최지 실정에 맞게 정한다.

제26조(해산) 준비위원회는 대회 준비기간과 대회기간 중 운영되며 종합체육대회 종료 후 해산한다.

제5장 경기종목

제27조(충청남도체육대회의 경기종목)

① 경기종목은 정식종목과 시범종목으로 나뉘며, 정식종목은 종합채점에 포함되는 종목과 비채점 종목으로 한다. 시범종목은 체육회가 특별히 보급, 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경기를 실시하나 종합채점에 포함되지 않는 종목을 말한다.

② 정식종목이 종합채점에 반영되는 비율은 필요에 따라 종합체육대회위원회 의결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충청남도체육대회 정식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점종목(19) : 검도, 게이트볼, 궁도,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볼링, 복싱, 수영, 씨름, 야구, 역도, 유도, 육상, 족구, 축구, 탁구, 태권도, 테니스

2. 비채점 종목(10) : 그라운드골프, 댄스스포츠, 산악(등산), 체조, 파크골프, 패러글라이딩, 합기도, 자전거, 승마, 농구

- ④ 정식종목의 채점종목, 비채점 종목의 신설 및 폐지는 종합체육대회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⑤ 제3항 1호에 해당하는 종목 중 해당 연도 충청남도체육대회에 8개 미만의 시·군이 참가한 종목(세부종목 포함)은 그 다음 해부터 시범종목으로 실시한다. 단, 기초종목 및 정책적 육성 종목은 종합체육대회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 할 수 있다.
- ⑥ 제4항에 따라 시범종목이 된 종목은 시범종목이 된 지 2년이 경과되어야 경기종목으로 재검토할 수 있다.
- ⑦ 시범종목으로 실시 중인 종목(세부종목 포함)에 최소 8개 미만의 시·군이 참가(3년 평균)한 경우에는 종합체육대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범종목에서 제외한다.

제28조(충청남도어르신생활체육대회의 경기종목) ① 충청남도어르신생활체육대회의 경기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게이트볼, 체조, 배드민턴, 탁구, 테니스, 그라운드골프, 축구, 파크골프
- ② 충청남도어르신생활체육대회의 경기종목 선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한다.
 - 1. 충청남도체육회에 가입된 회원종목단체 중 10개 이상의 시·군 회원종목단체가 결성된 종목
 - 2. 연 1회 이상 회원종목단체에서 주관하는 체육대회를 개최하거나 종목별 전국대회에 참가하는 종목
- ③ 경기종목에 대한 조정(확대 등)은 시·군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종합체육대회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29조(부별 및 종별, 세부종목 등) 각 경기종목의 부별 및 종별, 실시 세부종목 등은 제38조에 의한다.

제30조(경기종목 등의 채택 및 취소) 경기종목, 부별, 종별 세부종목의 채택 및 취소는 종합체육대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6장 대회임원

제31조(임원구분) 종합체육대회의 임원은 대회임원, 회원종목단체 임원, 개최지 준비임원, 개최지 집행임원으로 구분한다.

제32조(대회임원) ① 대회임원은 체육회 회장이 위촉하며 대회기간 중 활동한다.

② 대회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대회장은 체육회 회장으로 한다.
2. 부대회장은 체육회 부회장과 개최 시·군체육회 회장이 한다.
3. 임원은 대회에 참가한 시·군체육회 회장, 회원종목단체장, 체육회 임원 등으로 한다.
5. 집행위원장은 체육회 사무처장으로 한다.
6. 집행부위원장은 개최 시·군체육회 사무국장으로 한다.
7. 집행위원은 대회에 참가한 시군체육회 사무국장, 회원종목단체 사무국장 등으로 한다.
8. 소청심의위원회는 위원장에 담당운영 부장, 위원은 유관단체(도청, 교육청) 과장, 관련부서 팀장, 개최지 체육회 사무국장을 포함한 약간 명으로 한다.
9. 대회운영부는 체육회 직원으로 구성한다.

제33조(해당회원단체 임원) 종합체육대회의 경기종목별 임원은 체육회가 정하는 부서에 따라 해당회원종목단체의 추천에 의하여 구성한다.

제34조(개최지 준비위원 및 개최 집행임원) 개최지 준비임원과 개최지 집행위원은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른다.

제7장 소청 및 처리

제35조(소청심의위원회) ① 종합체육대회에 참가한 임원, 선수 및 응원단에 부정, 불미한 사실이 있거나, 제38조 경기운영에 따른 종목별 경기에 대한 소청 및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소청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처리한다.

제36조(참가금지) ① 종합체육대회에 참가신청을 한 후 이유 없이 불참하거나 경기에 출전하였다가 도중에 기권한 개인선수 및 단체는 차기 종합체육대회에 참가를 금할 수 있다.

② 경기에 출전하였다가 도중에 기권한 개인선수 및 단체는 대회종료 후 1주일 이내에 시·군체육회를 통해 기권 사유서(일시, 장소, 주요사유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상기 ②항에도 불구하고 기권 사유가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될 경우 차기 종합체육대회 참가를 금지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해당선수 및 단체에 대한 대회참가 심의를 할 경우에는 해당 선수 및 관계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제37조(규정준수의무) ① 준비위원회 등 종합체육대회를 준비하거나 운영하는 관련단체는 이 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가 있다.

② 해당단체가 이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육회의 별도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8장 대회운영

제38조(참가요강 및 내규) 대회참가, 경기종목, 경기운영, 경기장, 채점 및 시상, 개·폐회식 등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참가요강 및 내규로 정한다.

제39조(평가회 개최) 종합체육대회의 준비단계 부터 종료 시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여 개선사항을 차기대회에 반영하기 위한 평가회를 개최한다.

부 칙(2018. 11. 15.)

제1조(기존 대회와의 동일성) 이 규정에 의한 “충청남도체육대회”는 2020년 이전의 (구)충청남도민체육대회, 충청남도민생활체육대회가 통합된 대회로 본다.

제2조(경과조치) ① 충청남도체육대회(2020 통합대회) 개최 이전의 제71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 제27회 충청남도민생활체육대회에 한하여 (구)충청남도민체육대회 규정, (구)충청남도민생활체육대회 규정을 적용한다. 단 양대회의 (구)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은 종합체육대회위원회로 승계한다.

② 이 규정 시행 전에 충청남도체육대회 개최지 또는 충청남도어르신생활체육대회 개최지로 선정된 시·군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개최지로 본다.

제3조(2020 충청남도체육대회 개최지 결정) 이 규정 18조(개최지의 결정)에 불

구하고 2020 충청남도체육대회 첫 번째 개최지 결정은 이 규정 시행 전에 구성된 충청남도민(생활)체육대회 통합준비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개최지를 이 규정 제 12조(설치)에 따라 구성된 종합체육대회 위원회에서 추인함으로써 개최지가 결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타 규정의 폐지) ① 제1항에 따라 제71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 제27회 충청남도민생활체육대회 종료 후 (구)충청남도민체육대회 규정 및 (구)충청남도민생활체육대회 규정은 폐지한다.

제5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종합체육대회 경기운영내규

제정

2019. 1. 2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충청남도 종합체육대회 규정 제38조에 따라 종합체육대회의 경기를 조직적이고 체계 있게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대회운영

제2조(예선대회) 시군체육회는 종합체육대회에 참가 시군 대표선수를 선발하기 위하여 예선대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3조(참가신청) 시군별 예선대회에서 대표로 선발된 개인 및 단체는 대회 참가요강에서 정한 기일 내에 해당 시군체육회장이 참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경기종목별로 특별한 사유가 있어 예선대회를 거치지 아니한 자를 참가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시군체육회장이 결정하여 신청해야 한다.

제4조(대회참가) ① 종합체육대회는 시군에서 신청한 개인 및 단체가 참가하며 대회참가요강의 적용을 받는다.

② 충청남도체육대회에 참가신청 후 토너먼트 세부종목 중 4개 시군 미만이 참가를, 기록경기 세부종목 중 5명 미만이 참가를 하였을 경우 그 해당되는 종합점수 채점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③ 충청남도체육대회에 참가신청 후 토너먼트 세부종목 중 4개 시군 이상이 참가를, 기록경기 세부종목 중 5명 이상이 참가신청을 한 후 일부 선수가 아무런 사유 없이 불출전 하였을 경우에도 제2항을 적용하며, 그 불출전한 단체(선수)는 충청남도 종합체육대회 규정 제29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제5조(참가요강) ① 종합체육대회의 일반사항, 시상, 참가자격, 경기종목별 참가는 체육회가 별도로 정한 참가요강에 의한다.

② 종합체육대회의 참가요강은 종합체육대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6조(대회방법) 종합체육대회의 경기는 시군 대항으로 한다.

제7조(경기방법 및 경기규칙) 종합체육대회의 경기는 해당 회원종목단체의 경기규칙에 따르되, 제3장 경기방법과 같이 운영한다.

제8조(경기진행) ① 종합체육대회의 모든 경기는 해당 회원종목단체 책임 하에 이를 진행한다.

② 대회본부는 대회기간 중 해당 회원종목단체가 경기운영을 잘못하여 이에 대한 다툼이 발생되거나 경기 참가자들이 경기장 질서를 크게 문란하게 하여 더 이상 경기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대회본부의 결의로 해당 경기의 모든 경기일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해당 경기의 모든 경기 일정이 취소된 종목은 당해 연도 종합체육대회에서 실시하지 않은 종목으로 간주하며, 충청남도체육대회의 종합체점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대회 중 경기장 질서문란 행위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종목의 경우(대회 중 심판부정, 선수폭력, 학부모의 경기장 점거 등) 3년간 확정배점 50%를 적용하고 2회 이상 발생이 될 경우에는 종합체육대회 경기종목에서 제외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종합체육대회 경기종목에서 제외된 종목은 3년이 경과하여야 경기종목으로 재검토할 수 있다.

제9조(경기일정) ① 종합체육대회 경기일정은 해당 회원종목단체가 작성하며 체육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② 전국체전의 출전 등 선수 대다수가 참여하여 종합체육대회 기간 중 경기진행이 어려운 종목은 대회 기간 전에 경기를 진행할 수 있다.

제10조(경기심판) ① 경기심판은 해당 회원종목단체의 심판규정에 의하되 그 해당 회원종목단체가 지정한 심판원이 담당한다.

② 심판의 판정에 대한 소청은 당해 경기종목의 심판부장이 이를 처리한다.

③ 해당 경기종목 심판부장의 결정에 대한 상소가 있거나 기타 결정되지 않은 심판판정에 대한 사항은 대회본부 소청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처리한다.

제11조(무자격선수 출장) ① 단체경기 또는 개인경기 단체전 종목에 있어서, 대회 개막 이후 무자격선수가 출장하였을 때에는 당해 단체는 몰수 처리한다. 출장이라 함은 경기시작 전 해당경기 단체의 규정에 따라 선수명단을 제출하는 시점을 말한다.

- ② 참가 신청하여 경기에 실제로 출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격으로 한다.
- ③ 무자격 선수 출장이 확인되어 몰수 처리되었을 경우, 소속 시군은 당해 종목에 대하여 차기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당해 종목이라 함은 단체경기, 개인경기 단체전 종목은 당해 종별을, 개인경기종목은 당해 세부종목 및 체급을 말한다.

제12조(지위변동) 무자격 선수가 출장하였을 때에는 무자격선수 또는 그 소속단체는 즉시 몰수 처리하고 그 선수 또는 단체가 획득한 모든 지위는 무효로 하되, 실격 선수 또는 단체에 패한 상대방의 지위는 회복되지 아니한다.

제3장 경기방법

제13조(경기방법) 종합체육대회의 경기는 채점종목과 비채점종목으로 나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한다.

1. 채점종목: 검도, 게이트볼, 궁도,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복싱, 볼링, 수영, 씨름, 야구, 역도, 유도, 육상, 족구, 축구, 탁구, 태권도, 테니스
2. 비채점종목: 그라운드골프, 농구, 댄스스포츠, 산악, 승마, 자전거, 체조, 파크골프, 패러글라이딩, 합기도
3. 기록경기
 - 가. 개인 기록경기: 역도, 육상, 수영
 - 나. 단체 및 개인 기록경기: 궁도, 자전거
 - 다. 개인 점수경기: 보디빌딩, 승마
 - 라. 단체 및 개인 점수경기: 댄스스포츠, 볼링, 산악, 체조
4. 토너먼트경기
 - 가. 단체 경기: 게이트볼, 농구, 배구, 야구, 족구, 축구
 - 나. 개인경기 단체전: 검도, 그라운드골프, 배드민턴, 탁구, 테니스, 파크골프, 패러글라이딩
 - 다. 개인경기(체급경기 등): 복싱, 유도, 씨름, 태권도, 합기도

제14조(대진추첨) ① 토너먼트경기의 대진추첨은 시드를 배정한 후 시군 대표자의 추첨으로 결정한다.

② 대진추첨은 각 시군 대표자 입회하에 추첨으로 결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체육회가 결정하며, 각 회원종목단체의 결정에 따를 수도 있다.

제15조(단체경기 시드배정) 단체경기(개인경기 단체전경기 포함)는 시드제를 적용하며, 시드는 개최지팀에 배정하되, 별표 1의 '1'의 위치에 배정한다.

제16조(개인경기 시드배정) 토너먼트 경기로 진행되는 개인경기는 대회 개최지 선수에만 시드를 배정하며 시드는 별표 1의 '1'에 배정한다.

제17조(경기진행 순서) 토너먼트는 별표 1의 경기진행 순서에 따라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승패결정) 토너먼트경기에 있어서 동위자 순위전(3, 4위전, 5, 6, 7, 8위전 등)을 하지 아니하며 무승부일 경우 참가요강에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해당 회원종목단체 경기규칙에 의거하여 승패를 결정한다.

제 4 장 경기기록 관리

제19조(경기기록 보고) 종합체육대회의 모든 경기기록은 체육회가 제정한 소정양식에 의거 작성하되, 해당 회원종목단체의 경기부장과 기록 책임자가 확인·서명을 한 후 대회기록시스템에 신속·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한다.

제19조의2(경기영상 촬영 및 외부공개) 종합체육대회의 종목별 경기장 내에서 영상을 촬영할 수 있으며, 공공의 목적으로 외부에 공개될 수 있다.

제 5 장 심판 및 소청

제20조(심판운영 및 배정) 종합체육대회의 경기심판은 해당 회원종목단체 별 심판위원회규정에 의하되 그 해당 회원종목단체 별로 지정한 심판원이 담당한다.

제21조(소청처리) ① 충청남도종합체육대회규정 내 경기운영내규 제11조 제3항에 따라 처리되지 아니하였거나 기타 심판부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회소청심의위원회가 처리한다.

② 시군체육회는 소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소청심의위원회는 시군체육회 임원 3명과 해당 회원종목단체의 심판부장만이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제22조(소청판결) 대회본부 소청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최종 결정이며, 결정에 대한 이의는 제출할 수 없다.

제 6 장 경기장 배정 및 운영

제23조(경기장 배정 및 사용승인) ① 종합체육대회의 종목별 경기장을 배정함에 있어 개최 시군 내 체육시설을 최대한 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 개최 시군 이외 타 시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대회개최 3개월 전까지 해당 시군 체육시설관리 주체와 협의한 후 시설이용에 관한 사항을 체육회로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개최지는 경기장 배정안과 함께 경기장의 조명, 안전망, 차광막, 관중수용 능력, 바닥재의 상태, 득점판 등의 경기진행시설 및 경기진행에 필요한 각종 통신시설, 비품 등을 명시한 각 경기장별 도면을 당해 대회개최 5개월 전까지 체육회로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회원종목단체의 사용 확인과 체육회의 공·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국제규정상 공인을 필요로 하는 경기장은 해당 회원종목단체의 공인을 받아야 한다.<해당종목: 육상, 수영(경영)>

④ 개최지는 제1항에 따라 경기종목별 경기장을 배정함에 있어 참가하는 종목의 인원을 감안하여 적정한 숙박이 가능한 곳으로 배정해야 한다.

제24조(경기장 규격) 개최지는 해당 경기종목의 회원종목단체 경기규칙에 의한 정 규규격을 갖춘 경기장을 준비하여야 하며, 관람객 수용인원의 사전 검토 및 적정 배정으로 경기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25조(시설 및 경기용기구 등) 개최지는 해당 회원종목단체 관계규정에 의한 경기 시설 및 경기용기구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6조(경기장 출입신분증) 개최지는 경기장 질서를 위하여 대회임원, 경기임원, 참가선수단, 기자단, 대회준비 관계자 및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경기장 출입신분증을 발급해야한다.

제27조(안전사고 예방 의무) ① 개최지는 경기운영내규 제23조 제2항에 따라 배정된 경기장 승인이 완료된 후에는 반드시 의료진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개최지는 공·승인이 완료된 경기장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부 칙(2019. 1. 29.)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종합체육대회위원회에서 의결 받을 날로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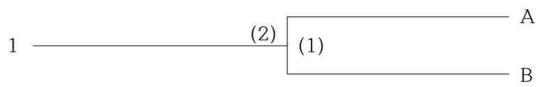
[별표 1]

토너먼트 경기순서 및 시드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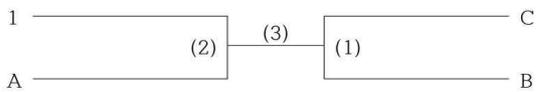
범례 : ()안의 숫자는 경기진행 순서

1은 시드번호 A, B, C...는 추첨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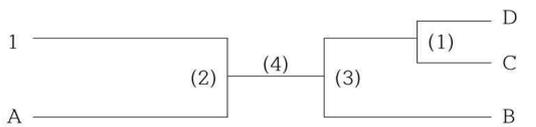
3개팀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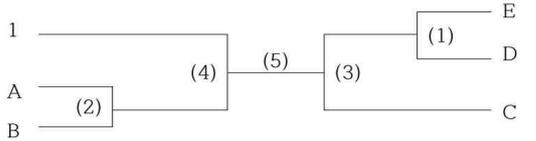
4개팀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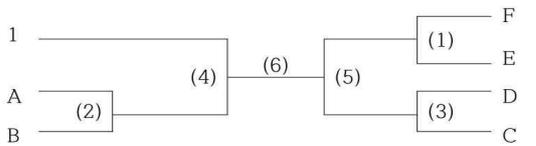
5개팀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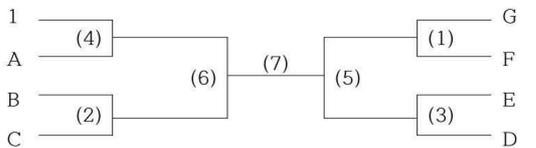
6개팀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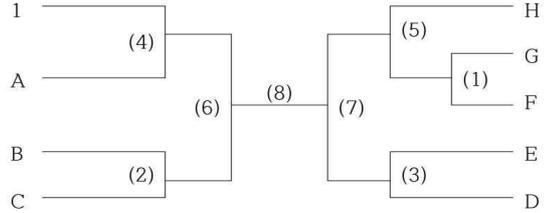
7개팀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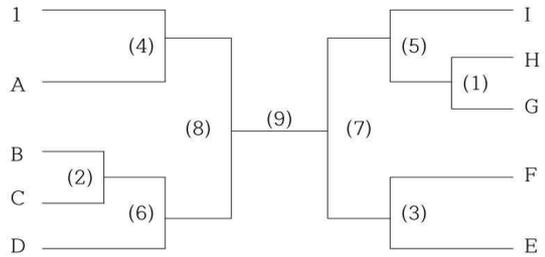
8개팀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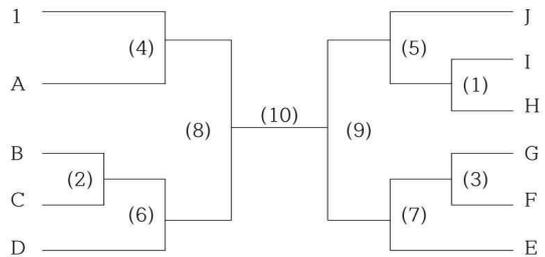
9개팀 참가



10개팀 참가



11개팀 참가



충청남도체육대회 채점 및 시상내규

제정

2019. 1. 2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충청남도체육대회 규정 제38조에 따라 충청남도체육대회의 시군별·부문별·종목별·세부종목별 순위 결정을 위한 채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채점구분) 충청남도체육대회 채점은 종합채점, 경기부문채점, 세부종목채점으로 구분한다. 종합채점은 채점종목의 시군별 획득점수만 포함한다.

제3조(시상구분) 충청남도체육대회의 시상 종류와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종합시상
 - 가. 1위: 우승기, 도지사배
 - 나. 2위: 준우승기, 도지사배
 - 다. 3위: 3위기, 도지사배
2. 경기종목별 종합시상
 - 가. 1위: 도지사배, 상장
 - 나. 2위: 도지사배, 상장
 - 다. 3위: 도지사배, 상장
3. 경기종목별 세부종목시상
 - 가. 1위: 금메달, 상장
 - 나. 2위: 은메달, 상장
 - 다. 3위: 동메달, 상장
4. 특별상 시상
 - 가. 성취상 1위: 도지사배
 - 나. 성취상 2위: 도지사배
 - 다. 성취상 3위: 도지사배
 - 라. 모범선수단상(1시군): 도지사배

5. 시범종목시상

- 가. 1위: 금메달, 상장
- 나. 2위: 은메달, 상장
- 다. 3위: 동메달, 상장

제2장 종합채점

제4조(종합순위 결정) ① 충청남도체육대회의 시군 종합순위는 시군의 종합점수로 결정한다.

② 시군의 종합점수는 채점종목 경기부문별 종합점수의 합계로 결정한다.

제5조(동점일 경우의 순위결정) 종합순위를 결정할 때 종합점수가 같은 시군이 있으면 상위입상 경기부문 수가 많은 시군을 상위로 결정한다.

제3장 경기부문 채점

제6조(경기부문의 채점) ① 충청남도체육대회 시군의 경기부문 종합점수는 종목별 종합점수로 결정한다.

② 종목별 종합점수는 참가 시군의 수에 따라 결정하되, 세부종목 채점합계가 최상위 시군을 1,500점으로 하고 순차적으로 50점씩 감산하여 결정한다.

③ 세부종목 채점합계는 제4장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제7조(전국체육대회성적 합산) ① 시군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직전년도 하계전국체육대회 성적을 1개 부문으로 채점하여 합산한다.

② 채점방법은 전국체육대회 획득점수 순으로 최상위 시군을 1,500점으로 하고 순차적으로 50점씩 감산하여 배점한다.

③ 2개 이상의 팀을 육성하는 경우 획득점수가 가장 높은 팀의 점수를 반영한다.

제8조(역전경주대회성적 합산) ① 해당연도 3.1절 기념 충청남도지사기 시군대항역전경주대회의 성적(순위)을 1개 부문으로 채점하여 시군 종합점수에 합산한다.

② 채점방법은 참가 시군의 수에 따라 결정하되, 최상위 시군을 1,500점으로 하고 순차적으로 50점씩 감산하여 인정한다.

③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미 개최 시에는 채점에서 제외한다.

제9조(동순위 배점) 동순위 시군이 2 이상일 때에는 해당 동위수에 해당하는 순위 점수를 합산하여 이를 동위수로 등분 배점한다.

제10조(동점일 경우의 순위결정) 경기부문 순위를 결정할 때 경기부문 점수가 같은 시군이 있으면 상위입상 세부종목 수가 많은 시군을 상위로 결정한다.

제11조(경기기록 책임자) ① 경기부문별 채점은 회원종목단체 주관으로 실시한다.
 ② 회원종목단체는 대회본부(기록부)의 기록을 확인하고 채점하여 기록부장에게 제출한다.

제4장 세부종목 채점

제12조(기록경기 채점) ① 기록경기의 채점은 세부종목별 8위까지의 입선자만 채점하되 1개 시군에 2인 이상 입선할 때에는 상위자만 채점한다.(궁도, 볼링, 보디빌딩, 역도 제외)

| 구분 \ 순위 | 1위 | 2위 | 3위 | 4위 | 5위 | 6위 | 7위 | 8위 |
|---------|-----|-----|-----|-----|----|----|----|----|
| 개인전 | 8점 | 7점 | 6점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 단체전 | 16점 | 14점 | 12점 | 10점 | 8점 | 6점 | 4점 | 2점 |

② 궁도, 볼링 경기종목은 단체기록이 최하위 시군을 1점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1점씩 가산하여 채점한다.

③ 보디빌딩 경기종목은 체급별 8위까지 채점한다. 한 체급에 2명이 참가하여 8위 이내의 성적을 거둔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모두 인정한다.

| 순위 | 1위 | 2위 | 3위 | 4위 | 5위 | 6위 | 7위 | 8위 |
|----|----|----|----|----|----|----|----|----|
| 배점 | 8점 | 7점 | 6점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④ 역도 경기종목은 합계, 인상, 용상으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채점하되 1개 시군에 2인 이상이 입선할 때에는 상위자만 채점한다.

| 구분 \ 순위 | 1위 | 2위 | 3위 | 4위 | 5위 | 6위 | 7위 | 8위 |
|---------|----|----|----|----|----|----|----|----|
| 합계 | 8점 | 7점 | 6점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 인상, 용상 | 3점 | 2점 | 1점 | - | - | - | - | - |

제14조(토너먼트경기 채점) ① 토너먼트경기의 종별(체급별) 채점은 다음과 같이 5위까지만 채점한다.

| 구분 \ 순위 | 1위 | 2위 | 3위 | 5위 |
|-----------|----|----|------|------|
| 배 점 | 8점 | 7점 | 5.5점 | 2.5점 |
| 개인 또는 단체수 | 1 | 1 | 2 | 4 |

② 토너먼트경기는 시드제를 적용하며 시드는 개최지 팀에 배정하되 개최지 팀이 불참, 몰수, 실격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탁구 개인전 및 족구 학생부는 종목별 참가요령에 따라 채점한다.

제15조(비채점종목의 채점) 비채점종목은 종목별 참가요령 채점방법에 따라 채점한다. 단, 종목별 종합시상은 실시하되 시군 종합점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6조(동순위 배점) 세부종목 및 체급별 경기에서 동순위 시군이 2 이상일 때에는 동위수에 해당하는 차위 점수를 합산하여 이를 동위수로 등분 배점한다.

제5장 보칙

제17조(기권, 몰수, 불출장 채점) ① 기권, 몰수 또는 불출장할 때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② 경기규칙에 따라 경기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의 기권과 경기몰수는 해당 회원종목단체의 사유서를 충청남도종합체육대회 규정 제35조의 소청 심사위원회가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18조(시행세칙) ① 충청남도체육대회 채점에 관하여 이 내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회원종목단체 규정을 따른다.

② 기타 충청남도체육대회 채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종합체육대회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충청남도어르신생활체육대회 채점 및 시상) 충청남도어르신생활체육대회는 종목별 채점 및 시상으로 한다.

제2조(시행일) 이 내규는 종합체육대회위원회에서 의결 받을 날로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체육대회 특별상 내규

제정 2019. 1. 29.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충청남도체육대회 채점 및 시상내규 제1장 제3조의 특별상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상) ① 충청남도체육대회 규정 제1장 제3조와 같이 시상한다.

② 도민체육대회 특별상시상은 폐회식에서 실시한다.

제3조(성취상) 성취상은 전년 대비 득점이 많이 향상된 시군 순으로 결정한다.

제4조(모범선수단상) ① 모범선수단상은 참가선수단이 경기질서를 유지하여 단합된 모습으로 모범이 되는 시군에 시상한다.

② 모범선수단상 시상대상 시군이 종합시상, 성취상 대상 시군일 경우에는 차순위 시군을 시상할 수 있다.

제5조(심사위원회) ① 모범선수단상 시상 대상 시군 선정을 위하여 특별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충청남도체육대회 임원장이 되며, 위원은 충청남도체육대회 개최종목 회원종목단체 사무국장과 시군 체육회 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

제6조(채점) ① 모범선수단상 시상 대상은 가장 많은 득점을 획득한 시군을 선정한다.

② 모범선수단상은 위원이 기록한 채점표에 의하며 기록되지 않은 채점표는 이를 무효로 한다.

제7조(보칙) 충청남도체육대회 특별상 시상에 관하여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종합체육대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종합체육대회위원회에서 의결 받을 날로부터 시행한다.